

제429회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4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검찰개혁 공청회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감사원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법무부 소관
  - 대법원 소관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59)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4)
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7)
21.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96)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2)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8)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0)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6)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7)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1)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4)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1)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4)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2)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3)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1)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9)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0)
36.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3)
3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1)
3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3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5)

-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6)  
 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7)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8)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4)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5)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8)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4)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6)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5)  
 5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0)  
 51.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0)  
 52.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6)
- 

### **상정된 안건**

1. 검찰개혁 공청회	.....	15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6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64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현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65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	82
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	82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	82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	82
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	82
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	82
1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1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	82
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	82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	82
1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	82
1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1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59) .....	98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4) .....	98
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7) .....	98
21.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96) .....	98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2) .....	98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8) .....	98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0) .....	98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6) .....	98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7) .....	98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1) .....	98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4) .....	98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1) .....	98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4) .....	98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2) .....	98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3)	98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1)	98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9)	98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0)	98
36.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3)	98
3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1)	98
3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98
3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5)	98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6)	99
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7)	99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8)	99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4)	99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5)	99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8)	99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4)	99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6)	99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99
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5)	99
5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0)	99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0)	99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6)	99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120
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120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	120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120
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	121
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	121
1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1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	121
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	121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	121
1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	121
1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이춘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혁진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간사부터 먼저 선임을 해 주세요. 지금 간사 선임도 안 하고 무슨 인사말을 합니까?

○**장경태 위원** 안건 전에 원래 인사 먼저 합니다. 의사일정 아시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간사 선임을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보임 인사가 먼저지.

아니, 이것은 모든 관례를 다 찾아보세요.

○**신동욱 위원** 순서대로 해 주세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저쪽은 저렇게 신속하게 하시면서.....

○**박준태 위원** 간사 선임 밀려 있잖아요.

○**최혁진 위원** 초선 의원으로 왔는데 인사부터 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하시면 됩니다.

○**신동욱 위원** 간사부터 먼저 선임해 주세요.

○**최혁진 위원** 인사말 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음이 많습니다. 감안하시고 그냥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꼿꼿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혁진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회의 중 반복적 고성·욕설, 회의 방해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동료 위원을 모욕했고 일부 위원들은 집단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며 국회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인사입니까?

신상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저는 이러한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국회 본연의 품격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이 법사위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척결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박준태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최혁진 위원** 그러나 현 재판부 체계로는 정상적 내란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바로 그 미온이 사법부 스스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내란과 같은 국가반역 범죄를 기존 재판부에만 맡기는 것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별도 재판부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켜 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농단과 내란 옹호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

해체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셋째, 사법개혁입니다. 정대택 사건에서 법원은 최은순에게 무죄를, 정대택 씨에게는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의 가족은 김충식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놀랍게도 서회건설이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반역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 없이는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저 최혁진, 국민이 명령한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보좌해 주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요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의 발언 중에는 발언을 방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발언 도중에 그 발언을 방해하는 위원들은 표식을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을 떠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진술 중일 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 중일 때 발언을 방해하시는 위원님들이 횟수가 누적된다면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이 회의장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탑재된 노트북의 뚜껑에 회의장에 있을 수 없는 정치 구호를 써 붙이고 계시는데요, 각 당에서. 이것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은 각각 위원님들 각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 선임해서 빨리 두 간사 간에 합의해서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주진우 위원** 간사부터 좀 선임합시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부터 우선 말을 좀 합시다. 위원장 말도 방해합니까!

○**송석준 위원** 모두발언 하셨잖아요.

○**주진우 위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오늘 회의를 개회하며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위원들께 각각 두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생겼습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위원께서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입니다. 선배·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나경원 위원께 묻겠습니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

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장경태 위원** 아니, 신상발언 기회를 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은?
- 송석준 위원** 아니, 주시면 당연히 하지요.
- 장경태 위원** 아니, 신상발언 기회 주신다잖아요, 위원장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 주진우 위원** 규탄대회 하러 갔습니다.
- 장경태 위원** 맨날 그렇게 꽁무니 빼는 게 아주 그냥 일이구먼, 일.
- 송석준 위원** 꽁무니 빼는 게 아니라……
-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주세요.
- 장경태 위원** 습관이 꽁무니야, 습관이 꽁무니.
- 조배숙 위원** 아니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정식으로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 김용민 위원** 아니, 대리 사과 필요 없어요, 본인이 사과해야지.
- 김기표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신상발언할 것인지 물어보시니 가서 말씀해 보세요.
- 조배숙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 박준태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 김기표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운영을 하시기를 나경원 위원께서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서 물어보셔서 진행을 하세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이 아마 사실상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으니까 나경원 위원 측에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 김기표 위원** 물어 주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순서지.
- 송석준 위원** 바로 오시면 그때 신상발언 기회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한번 주시지요.
- 장경태 위원** 아니, 간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자리에 없어서 선임을 못 하겠네요, 보니까. 규탄대회 가시느라…… 간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정말.
- 김기표 위원** 회의도 이렇게 빠지는 사람을 무슨 간사를 시킵니까?
- 박준태 위원** 아니, 지금 간사 선임하실 거면 바로 오시라고 할게요.
- 위원장 추미애** 간사가 이렇게 회의장을 나가 버리면……
- 장경태 위원** 상임위 회의장도 박차고 나가고 말이야.
- 위원장 추미애** 들어 보십시오.

간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들 간의 상호 호선으로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이 회의장을 이탈하지 않고 회의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지만 피선자격이 있으신 것이지 이렇게 회의 시작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등 하시다가……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이 자리에 보임돼 오셨을 때 바로 제가 인사말씀할 기회를 먼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이 새로 보임돼 오시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경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 보임하신 위원에 대해서 경청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손 들고 소란하고 의사를 발언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그 자세

로서는 간사 선임 자격, 피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국민이 보실 때?

○송석준 위원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깐 비우신 거예요. 바로 들어오셔서 입장 발표를 하실 거니까요.

○위원장 추미애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최소한도 위원으로서의 성실성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전에.

○송석준 위원 사정이 있어서 잠깐 비우신 거예요.

○박준태 위원 모욕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 법사위가 무슨 전투장입니까?

○장경태 위원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신상발언하겠다고 손 거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상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시고 나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상발언 신청을 하지 마시든가요.

○김기표 위원 안 바쁘고 자리를 안 비울 분 중에서 간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맨날 바빠서 자리 비우면 간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님, 자리 계속 지키실 송 위원님간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자리를 자꾸 비우면 간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위원장 추미애 회의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두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이 출석하시는 경우에 제가 따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드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태 위원님.

○송석준 위원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는데……

○위원장 추미애 많이 하셨잖아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 보십시오. 더 센 상법, 더 센 특검법, 더 센 위원장. 오늘 보세요.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 오전에는 검찰 해체하겠다고 공청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특검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아마도 단독으로 통과시키시겠지요. 그리고 오후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을 또 상정하는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이런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오늘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 안 해 주고 골탕 먹이고, 본 위원은 제 뜻과 전혀 관계없이 법사위 1소위에 강제 보임하고, 1소위에서 계속 활동해 오던 주진우 위원은 1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저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위원을 배제하고 입틀막하겠다는 것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이런 경쟁을 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이것 추미애 승,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 위원장님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누가 더 야당 잘 괴롭히나 이제 그만하시고요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진우 위원님 법안1소위에 반드시 배정해서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특검·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우리도 일을 좀 해야지요, 이제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질서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교섭단체 위원님들께 각각 두 분씩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두 분이 계신 관계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면 다음 순서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사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처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일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왔고 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올라온 겁니까? 윤석열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맡기고 검찰총장 맡겼더니 윤석열이 모든 검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를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그 엄마하고 23억 원을 벌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마시킨 게 윤석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끝내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이었던 이 제도 정리하고 진정하게 공소권 중심 그리고 수사권 중심의 중수청 이렇게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청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 오셨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고 공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나경원 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두 번 더 반복합니다. 나경원 위원은 완전히 잘못했어요. 스스로, 국민의힘도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렇게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말은 사과하고 지나가야지요. 그것 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민의힘 위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깜짝 놀랄 일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한 것,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통화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윤석열이 왜 그 시점에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나경원, 추경호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법 비상계엄을 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어떤 내통이 있었는지 당연히 원내대표실, 행정실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수

사하지 않으면 이 내란 전부 다 또 끊개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 더 이상 여기서 ‘윤 어계인’ 외치지 말고 윤석열 기대지도 말고 이제 딱 끊어 내시고 검찰개혁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재판할 수 있게 해 나갑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추미애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그렇고 다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가, 특히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 선임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간사는 당에서 교섭단체별로 그리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서 어떤 간사를 추천하든지 그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귀 당의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저 당 간사에 문제가 있으니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선미 의원이 ‘그건 그렇지 않고 이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례니까 이 지점에서 그냥 그만해 주시지요’ 해 가지고, 진선미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상식적인 이런 게 왜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도 발언을 제한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국회는 어떤 데입니까? 발언하는데입니다.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역에서 선출이 됐고 그 주민들,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 그렇게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그 대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계엄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랬으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다…… 좋습니다.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비민주적이고 위헌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헌법에 맞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 그저 우습게 넘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위법하고 위헌하고 법치주의 파괴하고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간사 선임 빨리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발언권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특검·내란 타령 언제까지 할 거냐?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남김없이 처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정당, 그 배후에 있던 정당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내란이 가능하게 했던 검찰, 법원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내란 종식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후에 일제 청산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해방된 지 한 8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제 청산을 잘못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이 백 년의 대계를 생각할 때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확실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 왔던 그런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행위의 척결은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란 세력 종식, 특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란 세력의 종식과 내란 행위 종식을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가열 차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말 정당해산되는 그런 정당임을 자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뭘 일 하겠다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간사를 하겠어요?

○송석준 위원 우리 지금……

○김기표 위원 잠깐만 조용히 해 보세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의총에서도 가만히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 초선 의원들은 다 잘 알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의견 열심히 피력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당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사 자리는 다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는데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간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초선 의원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초선 의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사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로 선임되고 싶으시거든 먼저 처절한 자기반성과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는 간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마치 국민주권정부에서,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는 이 정부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주권정부와 독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에도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진행 그리고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인데요, 만일에 국민주권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수사, 탄압—지금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그게 가능했다면, 그걸 의도했다면 국민의 정부하에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을 동원해서 국민의힘을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정부에서 저기 앉아 있는 법무부 소속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게다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내란 수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 3개의 특검이 이 정부 들어 가지고 겨우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자비한·가혹한·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던 저 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쥔 윤석열 내란 수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위, 가족에 대한 비위·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건건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언을 하시거나 의견을 표명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주장을 하실 건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의 밤에 왜 계엄 해제하려 국회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관저에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려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수괴 접견을 하려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나경원 위원에 대한 간사 선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검찰개혁 공청회를 실시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검찰개혁 공청회

(10시40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윤동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 차진아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한동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과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원래는 행정안전부차관님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만 예결위 참석 관계로 대신 조직국장님이 참석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상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종민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자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잘 만들어진 제도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꽂힐 수 있었던 것도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독점권을 철폐하고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혁신가들과 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빙곤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도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뛰어난 제도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 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정교한 각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교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제인 정부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형사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입니다.

형사사법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제일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금융사기 사건에서 보여 주었듯 범죄는 빠른 속도로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를 이용한 첨단범죄, 범죄수익의 해외 도피 등 범죄의 세계화도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것입니까?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입니다. 사법통제가 실종된 다수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 검찰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사인소추와 경찰소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높은 무죄율 등 문제로 1985년 소추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 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SFO)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0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 5840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은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자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정직한 사람들이 항상 패배하는 구조가 되고 맙니다.

1955년 중국의 한 농민이 중국공산당 중앙당에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며칠 후 모택동은 12년 내에 전국의 참새를 모두 소탕하라고 지시했고 베이징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참새의 전쟁을 벌여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지만 천적이 사라진 이듬해 봄 해충이 창궐했고 3년간 흉년이 이어지면서 4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는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면서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였습니다.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의 전전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미리 내려 놓은 결론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의 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지나치면 결점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동호** 국민대학교의 윤동호입니다.

형사절차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및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을 오남용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무고한 자 그 자신은 물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 대한 절차

적 통제장치를 두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무죄추정권, 진술거부권 등을 보장하고 강제적 수사에 대해서는 법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형사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또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적법절차보다 진실발견을 앞세워 왔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되면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지금도 검찰에 우호적인 법조인과 언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이 박탈되면 우리 사회에 범죄자가 넘쳐날 것처럼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말로는 정의를 외쳐 왔지만 늘 정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는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중수청과 수사 기능만 없어진 검찰청을 모두 장악하였다가 훗날 조직을 통합하여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오히려 검사가 법무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닌 사람도 법무부에 가면 검사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국수본과 중수청이 공존하면 수사권 집중 또는 수사기관 비대화가 우려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만 수사를 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 분산입니다.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비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소권만 가진 검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건 송치 제도와 수사지휘권을 부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가 클 것이다라는 주장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려는 속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줍니다. 검사가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갖고 중수청은 물론이고 국수본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에 대한 통제의 목소리가 강한 것은 제 생각에는 공소권만 갖게 될 검찰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논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지연수사, 부실수사, 과잉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현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사법통제라는 말 그리고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는 말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므로 결코 준사법기관일 수 없습니다. 사법통제란 말은 법관에 의한 통제를 말합니다. 바로 영장주의가 사법통제입니다. 수사·기소도 사법작용이므로 수사·기소 기관도 법관처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준사법기관이란 말에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기대를 여러 차례 저버리고 권한을 오남용하여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며 강력한 수사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와 공소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

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절차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는 주장의 숨은 의도는 검찰청에 수사부서와 수사인력 그리고 관련 예산을 남겨 두려는 것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의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은 사법작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업무에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사무에 관여하듯이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수위가 수사기관의 직무에 대한 이차적 감찰과 심의권을 가진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수사기관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수사권의 분산으로 인해서 공수처·중수청·국수본·특사경 사이의 수사권 경합의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거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수위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진아 교수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차진아 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를 근간 골자로 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수사기관들 간의 이른바 권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위 설치, 이러한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상설 특검법은 그대로 두고 있고 또한 현재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나아가서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검찰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더 최소화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도 없었고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경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개혁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법률에서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 같은 그런 법률에서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명칭이 헌법에 있는데 이걸 법률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인민의회법’ 혹은 ‘인민회의법’ 이렇게 바꾸면서 법률에서 ‘국회의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쪽에서 6쪽을 보시면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인데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의 실체를 바꾸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지만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실질을 바꾸는 것도 위헌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로서 상위법인 헌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을 전혀 갖지 않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게 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법관이 영장 심사하는 거랑 공소청의 검사가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수사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면으로만 서류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요식행위가 되거나 영장청구권 오남발이나 수사의 부적정성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6쪽에 보면 국수위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추천위원회 3명 이렇게 해서 이걸 가만히 보면 정부와 여당의 뜻이 11명 중에서 9명 내지 8명, 많게는 1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보면, 7쪽에 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감찰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 저는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이 이러한 국수위의 구성과 활동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는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부르는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와 결합했을 때 수사의 내용을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그렇다면 이것은 독재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정말로 위험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적인 관계로, 9쪽에 보면 행안부 소속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갈 것이냐, 법무부 소속으로 갈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헌법학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행안부로 갔을 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수본 이런

수사기관들이 같이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중수청의 인사조직체계를 과연 국수본이나 경찰청과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승진에 민감하고 계급정년제도가 엄격해서 사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굉장히 목매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라도 당장 성과를 내서 승진하면 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행안부에 두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변호사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한동수**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합니다.

저는 판사·검사·변호사 3개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어느 정치세력이나 법조라는 이익집단의 관점을 떠나서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서,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개혁 4법 모두 추석 전에 일괄 처리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합당하고 이것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결단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조직법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수위·중수청법 중에서 국수위의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법원의 재정신청전담부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현실적인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국수위법 중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수위의 필요성과 존재 의의 자체는 인정합니다.

소위 경찰 비대화론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현재 법률안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합리적 근거 없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찰의 수사권은 동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국수본으로 권한이 분산되고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헌법에는 영장신청권이지요, 기소권에 의한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재수사요청권, 사건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기록송부요구권 등 사실상 실질적으로 강력한 수사지휘통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검사가 해태한 것이지요. 게을리한 것이지요.

다음,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경찰을 근거 없이 비판하는 측면에서 경찰 전관, 사건 암장, 처리 지연 등의 지적이 있으나 이것은 일단 검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검 감찰부 범죄·비위 정보를 처리하면서, 역시 똑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비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감찰과 공수처의 수사 영역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이에 부합하는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도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습니다.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 왔습니다. 토크빌의 말처럼 수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베스에서 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계엄을 자행했습니다. 구속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과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검찰청법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지. 이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진술인 한동수** 진술인으로서 필요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 다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박준태 위원** 진술인, 이 법의 개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이성윤 위원** 들으세요, 진술인 말 들으시라고요.

○**위원장 추미애** 진술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방해하긴 뭘 방해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박준태 위원님, 진술인이 발언 중에는 위원장을 경유해서 말하세요.

○**이성윤 위원** 진술인 발언 왜 간섭합니까? 왜 간섭해요!

○**박준태 위원** 진술인의 권한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박준태 위원님,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을 경유해서 하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중립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성윤 위원** 관련 내용 맞잖아요. 왜 간섭을 해요?

○**박균택 위원** 의견을 들으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박준태 위원** 진술인이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박준태 위원님, 경고 한 번 했습니다. 1회 경고 기록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계속 경고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술인, 발언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진술인 한동수** 위원장님, 진술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왜 진술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이성윤 위원** 나중에 질의하세요.

○**박균택 위원** 아니,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역할을……

○**위원장 추미애**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건건이 의사진행을 방해하십니까? 상습범입니까?

○**송석준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추미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상습적인 문제가 있어요, 상습적인 문제가.

○**위원장 추미애** 문제가 있으면 진술인이 진술 끝난 다음에 발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토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상습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술인 한동수** 나경원 위원님과……

○**위원장 추미애** 아까 제가 모두에 회의 진행 방식을 알려 드렸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최소한 교양이라도 지키세요.

○**진술인 한동수** 세 분의 위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기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애초에 장점만이……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마이크 넣어 주시고 진술인에게 1분 더 기회를 드리세요.

○**진술인 한동수**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까 중단했었어요. 중단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1분 시간을 더 드리세요.

○**진술인 한동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중단했었다니까요, 마이크를. 설명을 해 드리세요.

○**진술인 한동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시작하십시오.

○**진술인 한동수** 애초에 장점만이 존재하고 부작용과 미흡함이 존재하지 않는 법제도 개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랜 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입니다.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 실제와 윤석열·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부분을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대체로 다 충실하게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완이 돼서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드세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소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법적인 결단 사항으로 봅니다.

국수위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 간의 관할 중복과 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등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 줍니다.

이의신청 부분 삭제 의견 드렸습니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가 중 검사가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나라는 4개 나라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일본, 한국, 벨기에, 멕시코입니다.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라는 수식이 돼 있지만 보완수사도 염연히 수사입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해서 동일성과 단일성의 제한요건도 현실적인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무색투명한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관련 나머지 사항은 제 25년 7월 18일 자 칼럼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능력이 떨어집니까? 검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수사능력이 더 뛰어나고 공정합니까? 경찰은 학벌이 떨어져서 수사능력이 떨어지고 인권침해 소지와 부패 위험이 많습니까?

검찰개혁의 완성은 현 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면, 원래 질의순서표가 있지요.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님 신상발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신상발언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공청회 중간에는 하지 마시고, 진술인들은 다른 일정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급적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보내드리시고 그다음에 신상발언은 우리끼리 하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진술인들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사실 검찰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독재의 완성에 이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관련 개혁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늘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관련된 법안을 보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는 이미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선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십니다. 이거 1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선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의회독재와 검찰독재를 얘기……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발언 시기에.

○**박준태 위원** 왜 발언을 재단하시고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추미애**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아요. 심지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인사가 아닌 이상한 정치공세를 하더구먼요.

○**김용민 위원**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장악을 통해서 완전히 독재의 완성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위원장께서 지금 발언을 막았기 때문에……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시간 자꾸 가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박은정 위원** 본인 발언이나 취소하세요. 초선한테 한 발언이나 사과하세요.

○나경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는 것……

○박은정 위원 뭘 가만히 있어요!

○나경원 위원 의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간사 선임도 안 해 줘, 소위원회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이게 바로 독재인데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차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소청장 이거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거 위헌 관련된 심판 청구할 만 것 아닙니까? 아니, 공소청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에 검사는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를 모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행안부 소속에 두겠다, 저는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최소한 검찰에서 본인이 했었던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해체법은 한마디로 의회독재에 이어서 수사권을 장악해서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검찰 해체하고 뭐 하겠다고 합니까?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정원 14명 인데 3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대법원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일당독재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 이것 현재에 위헌심판 청구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차진아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걱정되는 것이 현재도 또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현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재판관을 지금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검찰장악·검찰해체법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또 내란 특검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놔두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따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의 이런 독단적·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독재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음은 박군택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군택 위원 김종민 변호사님, 차진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개혁을 큰 틀에서 또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이 돼 가지고 왜 검찰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시는 상대방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저질러 왔던 지나친 폐악을 두 분도 보셨을 겁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검찰이 5년 가까이 보

였던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차진아 교수님, 김종민 변호사님도 저는 동의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의 검찰 폐지론이 나오는 거고 공소청·중수청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전제로 해서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으로의 분리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밀한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술인 김종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제가 검찰개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공청회에 와서도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론자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의 표준이고 유럽평의회 국가에서도 표준입니다. 그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술인 차진아 제 입장도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와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찰개혁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의 방향 자체가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정권에 맞서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것도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윤 정권 시절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느냐, 권력자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혁안들을 보면 더 심하게 정치적인 영향력하에 놓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수사기관들을.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수사기관들의, 검찰을 폐지하든 안 하든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가 수사하든 간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수사하든 간에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준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말씀하시는군요. 설령 그게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선택, 본인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흥기 같은 그런 행태, 이걸 막을 수 없는 단점은 여전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 그래서 분리를 하자는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나 이겁니다.

○진술인 차진아 저는 분리를 전제로 할 수 없는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박규택 위원 그건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진술인 차진아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잘못된 예외를 인정하십니까? 그것부터 폐지하셔야지요, 공수처도 폐지하시고. 그래서 지금 정말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다면 먼저 그런 기관들을 다 폐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곽규택 위원 귀한 말씀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전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검찰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신문에서 제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까지 경찰에서의 수사 관행을 보면,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또 검수완박 이런 제도 변경 이후에 사실 경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묻힌 채로, 도대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수개월, 1년 넘게 계속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치로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경찰의 장기미제가 폭증을 하고 또 경찰의 수사경과에 대한 지원 인력이 급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과로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말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변호사님도 검찰제도나 이런 사법제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종민** 법률신문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수사권 조정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형사사법은 완전 막힌 하수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도 막혀 있는데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철철 넘쳐서 대한민국 사회가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오물 덩어리로 가득찰 것이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검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되어 있고 모든 형사사건의 거의 99%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면 되지 수사보완권을, 보완수사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차례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고 4선인데요. 19대에 법사위를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에 의해서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유세 중에 실수로 뭐한 자를 빼트렸지요. 제가 기소가 됐어요. 똘똘 말려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1심, 2심, 3심 모두 다 무죄받았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검찰이 기소하면서 엄청나게 판례를 들이대더라고요. 그 엄청난 판례를 제가 다 다시 어디에서 생긴 판례인가 보니까 다 저에게 유리한 판례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저를 수사하고 그리고 나니까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잘라 내려고 엄청나게 공소유지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 말이 틀린 건 맞아. 그런데 실수야’라고 한 번에 정리해 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는 이런 사건이……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기소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검사는 기소를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청, 중수청으로 좀 나눕시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수사권도 쥐고 있고 기소권도 쥐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기소 중심으로 하시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맡깁시다. 거기서 일 잘하는 수사관은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말이지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또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저는 선출직이라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선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실 아닌 허위사실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어요. 그럴 때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보완해 보세요’라고. 보완수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것을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수사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이것 수사와 기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동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한동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진술인 한동수** 직접 보완수사 요청의, 요구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법의 관점은 아니고 절차법인 형소법에서 추후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야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오해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히 그것을 막 섞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검사들은 수사권……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진술인 한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윤동호 교수께 여쭙겠는데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문제점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통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동호**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들이 혹시 내 수사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검사가 직접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동호 교수님과 한동수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아까 발제하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진술인 윤동호** 일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을 잘하면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것은 없으십니까?

○**진술인 한동수** 미국의 실무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형소법상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우려하시는 공소시효 임박, 평통, 구속기간 만료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상호협력 관계에서 얼마든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관 등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추가적인 압수수색 부분들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와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수사자 휘도 현재 상호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실무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왜 자꾸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시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전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시 김건희 내란 특검법의, 권력형 부패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관 시장의 비리들이 여기에 노정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은정 위원**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게 있어서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윤동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찰이 사법통제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검찰은 행정공무원이고, 검사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사법부와 마찬가지의 조직·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어떤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성격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중수청을 설치하면 반드시 법무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김종민 변호사께서 SFO 하셨는데 지금 영국의 기본적인 국가범죄청은 사실상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독립기관에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가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또 국토안보부에 특별수사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PPT……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특별수사기구는 내무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를 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진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동호 교수님께서 아까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가 저는 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광우·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동안 검찰이 전부 다 기각을 해 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런 사례를 보시면 경찰 혹은 중수청에 대한 수사 통제는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에 의한 영장 그리고 법원에 의한 영장, 두 번의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윤동호** 저는 장기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적인 판단,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 사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지요. 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겠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그런데 김학의 모르겠다고, 김학의 아니라고 검찰이 뭉그적거리다가 보완수사를 했어요. 검찰이 열심히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무혐의. 저 동영상의 김학의가 김학의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줬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한동수 변호사님, 저 사건 아시지요?

○**진술인 한동수** 예.

○**박은정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한동수** 보완수사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요, 영장청구나 기소. 다만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를 빙자한 여러 가지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은정 위원**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대검 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

거든요.

법무부차관님, 대검 차장의 저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한동수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조개혁의 문제를……

○박은정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하셔도 됩니다.

○진술인 한동수 감사합니다.

구조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인적 청산의 문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이 검찰 구조개혁의 문제들을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편안함들이 유지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생도 거기에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참모인 현재의 민정수석도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공교롭게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 차장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일정한 인사권자의 깊은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빛의 혁명에서 제시된 3대 과제는 구조개혁, 인적 청산, 과거사 청산, 모두 다 미완인 상태로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깊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차례입니다.

○전현희 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검찰권력의 독점을 이번 차제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를 해결하자, 이것이 이번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또 취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동안 검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그런 권력의 화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검찰독재 국가로 진행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이전에도 또 권력과 야합해서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졌고 이번에는 검찰과 최고 권력이 야합을 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신들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에 굽복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와 뇌물, 여러 가지 각종 부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해 온 것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앞당겼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었지만 이것을 덮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데도 사실상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이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의 핵심을 검찰로 채웠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진출을 시켰고 또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주요 국가기관들을 대부분 검찰이 장악했고 또 검찰과 야합하는 법조인 출신들로 사실상 국가의 중요 핵심 부처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검찰독재 국가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독재 국가로 완성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살인을 통해서 대권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 가려고 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갖은 이런 사건들을…… 윤석열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김만배를 개인적 친분이 없고 모른다라고 주장했을 때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를 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김문기를 모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야합한 검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고 자초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윤동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진술인 윤동호 100%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검찰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실제로 작동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객관적이고 신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감정이 개입된, 그래서 뭔가 정파적으로…… 그래서 어떤 위원은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복수혈전이다.

저는 제도개혁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일방 어떤 편향적인 이런 개혁 문제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패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려면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의 천국이 됐다, 왜냐하면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범죄를 범했어도 대낮에 활보하고 다닌다,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 분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사회 통합에도 부작용이 있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절망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집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사건 문제도 있지만 일반 99%에 해당하는 민생사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형사고소를 가급적 안 한다고 합니다. 다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한동수 진술인께서 제가 보니까 본인께서 판사·검사·변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검사 할 때 그때 감찰직 아니었나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수사하셨나요?

○**진술인 한동수** 예, 영상녹화로 조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선……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진술인 한동수** 예.

○**조배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찰,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외부에서 공채로 되셨잖아요.

○**진술인 한동수** 공채는 아니고요. 공채 하니까 무슨 일반 사업 같기는 한데요 저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면접 보고……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술인 한동수** 6명의 후보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조배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진술인 한동수 다 알아요. 무슨 말씀……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 한동수 제 발언 아직……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진술인 한동수 제가 무수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건을 봐요, 감찰부장의 직무 중에.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 들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오늘 법률신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제도의 현실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낸 설문조사가 있어요.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게 경찰수사 사건의 전전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입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법조인 설문조사를 보면 이분들은 여도 야도 아니에요. 그냥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검찰에 바이어스(bias)된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진술인 한동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지금……

○진술인 한동수 지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법률신문은 기본적으로 법조라는 이익집단의 그런 것들을, 세력을, 그러한 견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의 그 여론조사의 표본 수가 전부는 아니고요.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있고 그게……

○진술인 한동수 일부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인 1779명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했었을 것이고 그것은 진술인께서도 역시 편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다 돼서……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은 이 공청회를 협조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고요, 때문에 진술인 개개인의 경력에 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신상을 저격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아닙니다. 저는 경력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혹시 수사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한동수 진술인에게 지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직무상 관련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

접적인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 윤석열을 범죄 인지한 인지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의 직무가 많은 일선 본청 단위의 사무감사의 전 기록들을 전부 다 봅니다. 그 기록의 오류들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건 송치주의, 뭐 굳이 육군 검찰관으로 근무했던 그런 것까지 운위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건 송치주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형사소송법상 폐지되었던 것들을 왜 새삼스럽게 다시 부활해서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조배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술인 한동수 저도 특별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진술인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대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검 감찰부장 임용 조건이 검사로서 먼저 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라고 명기하셔도 사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이지요?

○진술인 한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검사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얼마나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발언의 의미가 좀, 배경이 좀 이상하네요. 그걸 왜 물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이상한 게 아니지요. 감찰을 하셨잖아요. 주된 직책은 감찰이시잖아. 수사 몇 건이나 하셨어요?

○박은정 위원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있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수사를?

○위원장 추미애 정리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대검 감찰부에는 수사권이 권한으로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몇 건이나 했냐고요, 그래서?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은정 위원 수사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진술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검찰, 이제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게 그렇게 부역하고 또 면죄부를 주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시대적 명령이고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반드시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저 이성윤이 그 증거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를 막았

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했고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올해 6월에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계 불법자료를 줬다고 해서 저를 수사했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말 검찰에서 펍박을 받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싶습니다. 저만큼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한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또 외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도 저를 수사하고 나아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검찰개혁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검찰에 남아서, 아마 공소청에 남아서도 우리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에 중수청을 준다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 잔당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는 중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수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검찰 인사가 고위 인사 두 번 그다음에 하반기 검사 인사가 진행되었지요?

○진술인 **한동수** 예.

○이성윤 위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검찰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한동수** 이른바 친윤 검사들 부분은 상당 부분 인사를 보고 나간 검사들도 있고 그 전에 나간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성명, 입장을 표명했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검사들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할 겁니다. 중수청장, 중수청의 지휘부에 들어가고자 해서 역시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듯이, 공수처에 있는 송 모 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중수청을 또다시…… 김학의 출금 사건에도 나왔듯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그것을 다시 중수청에 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똑같은 정치적인 수사를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 아닌가요?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부역했던,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들이 남아 있는 한 법무부에 어떤 기관도 두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200여 명 되고 수사관은 6000여 명 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되면 기존에 있던 검찰 인력도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재배치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한동수**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령과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추후 국회의원들께서 잘 논의해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단 검사가 말하는, 검찰이 말하는 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관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포렌식 디지털 증거라든가 예금계좌 조회라든가 심지어는 판례까지 분석하고 과거에는 공소장까지 써 주기도 했었지요.

이런 점들에 비춰서 수사관들의 전문성 부분들은 상당 부분 중수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행안부로 소속을 두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인사 쪽으로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중앙지검을 보면, 중앙지검의 검사 배치표를 제가 보니까 한 5분의 2 정도만—국가송무도 좀 있던데요—여러 가지 집행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고 5분의 3 정도가 대개 수사라는 명목으로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판 이런 인력들은 한 5분의 2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직접 공판을 수행하게 된다면 공판 수행 인력은 좀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정확한……

특별한 점은 검사의 실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검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 불투명성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해 온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국정감사 하시려면 정보 제공 안 해서 힘든 것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말 정보들을 공개해서 적정 인원수를 다 하는 작업들을 아마 국회에서 여야 쌍방에서 서로 논의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차진아 진술인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차진아**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앞에서 다른 진술인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이걸 기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 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제도는 그래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잘 다듬어진 제도라는 평도 받지 않습니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의 이런 제도가 굉장히 포용적 제도로 경제 고도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그러한 국가 시스템으로 잘 안정돼 있는 나라다’.

일부 문제 있는 것은 고쳐야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 요즘 갑자기 사법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그게 범죄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된 분 그리고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를 괴롭힌 게 검찰이다, 저 검찰 혼내야겠다, 우리를 괴롭힌 저 사법부 혼내 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 한번 고쳐 보고 혼을 내 주겠다 이런 불순하고도 반국민 정서적인 그런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김종민 진술인님도 많이 얘기 듣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종민 예.

○송석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김종민 진술인님도 ‘문제가 있는 건 안다. 나도 검찰개혁주의자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잘하는 건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된 것들이 결국은 헌법이 정하는 검찰의 존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검찰과 법원,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경찰 또 이런 행정기관들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 온 어쩌면 가장 다듬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쩌면 이번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의 핵심은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을 기존의 경찰, 검찰 외에 이미 벌써 공수처라는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공수처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편성해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인력도 정원이 확보돼 있는데 자꾸 떠나요.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야당이 그 당시 무리수를 뒤 가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당시 여당이었지요. 그런데 그 공수처가 제자리를 못 잡고 겉돌고 예산 낭비하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또 새롭게 중수청을 만들겠다 또 공소청을 분리하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걸 중재·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국수위라는 것이 굉장히 공통적 조직이고 무소불위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헌법적 근거가 없단 얘기지요.

헌법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검찰개혁, 지금 양대 검찰 그리고 법원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또 국수위라는 무소불위의 권한 기관을 만들면서 개헌 논의는 없단 말이지요. 모든 것을 헌법적인 전체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까부수고 보겠다 이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행안부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조직 개편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또 막대하게 들고요. 새로운 조직이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희생 당하는 건 국민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결국은 수사기관이 늘어나서 일선의 국민들이 힘들고 일선의 수사관들이 과도한 일로 다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부서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민 진술인님께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통해서도 강조해 오셨지만 오늘 차분하게 이번 검찰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짧게 지적 한번, 마무리해 주시지

요.

.....  
○위원장대리 김용민 잠시만요.

원래 질의시간 중에 답변을 시작하시면 즉 이어 가게 해 드렸는데 질의시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이럴 때에는 허가를 받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종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진술문에 상세히 썼고요. 결국 승패는 각론과 디테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각론과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 그다음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점, 이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 그 다음 순서인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신 네 분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지요.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김건희가 한 거지요. 검찰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김건희가 검찰세력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과 관련 비교하면 검찰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새 밭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제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논리적 맥락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조직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 미국 같은 데, 경찰 엄청 많은 데 거기 경찰은 다 부패하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 경찰조직이 작은 데들 거기는 다 청렴합니까?

경찰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 이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려 보고 싶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지요.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걸 기소·수사 분리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소·수사 이쪽저쪽 가서 손 타 가지고 자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단호하게 해서 빨리 기소를 해 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한동수** 제가 한동수입니다.

○**최혁진 위원** 아, 윤동호 교수님.

○**진술인 윤동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혁진 위원** 예.

○**진술인 윤동호**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수처가 장래에는 공소 기능만 갖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워낙 작은 조직이고 인원도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유의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기소 분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는가. 그러면 현재 수사·기소가 통합돼 있는 검찰청 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 왔습니까, 그사이에? 내 오지 않았으니까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라는 원칙하에 견제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권들을 강화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권한 남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조직을 응징하고 개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장점인데 어떻게 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종민** 결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혁법안대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법통제 말씀을 하셨지만 영장 단계, 즉 판사가 수사기록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많은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수사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

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술인 한동수 위원장님, 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 의견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짧게만 말씀 주십시오.

○진술인 한동수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론, 신중론, 경찰 비대화론 또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서 공수처를 들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느냐를 보면 저도 헌법과 법률, 오래 많은 재판을 했고 재판연구관도 했고 법률 문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헌법과 법률 요점이 무엇인지,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셨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논의해 오고 또 논의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또 끄집어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하고…… 무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맞지 않은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자리에 그 논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들을 반영한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의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주권자의 결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조직법에 관해서 정부조직법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국수위법, 법률 조문들 또 검토보고서들 다 살펴보았는데 문제없습니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검찰에서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겠지, 혹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도 혹시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였는데—저렇게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이 저래 가지고 되겠는가, 검찰이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런 검찰이 더 이상 아닌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씹쓸하게 지켜봤었고.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만났을 때도 충격적인 것은 그 검사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현직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만나 보면.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키고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뜰뜰 뭉친 일부 검사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전체 검찰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거의 역사적인 어떤 진리가 됐지요. 그것을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수사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율성 따지면 한 사람이 원님재판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 수사의 효율성을 따져서 검찰

개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게 효율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독재로 흐르고 그래서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던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효율이 발생했지요. ‘이재명 잡아’ 하니까 그냥 효율성으로 아주 끊임 없이 뭉친 검찰이라는 집단이 아주 효율적으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못 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검찰개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진아 교수님, 아까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갖는 조직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말이에요. 검찰청이라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갖는 조직을 전제로 헌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반론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다른 분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진술인 차진아 그런데 방향은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는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진술인 차진아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현 정권의 비리를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표 위원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출발할까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가요?

○진술인 차진아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 차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건가요?

○진술인 차진아 저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김기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다 하고.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차진아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식의 그런 면지털이식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김기표 위원 아니,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여쭙습니다.

○진술인 차진아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왜 느끼냐와 관련해서요, 지금 윤석열 검찰

총장 당시 혹은 특수부 검사 당시 혹은 한동훈 검사 당시 사법농단·국정농단 그런 수사의 잘못된 점이 지금 무죄 판결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진술인 차진아 그리고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그 방향이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 방향이 어떤 건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허상이 아니냐, 말하자면.

○진술인 차진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수사권을……

○김기표 위원 그거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진술인 차진아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나……

○김기표 위원 예,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차진아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현실을 간파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직접수사권 다 없애고 혹은 유럽대륙처럼 수사지휘권만 남겨 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서 공수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공수처의 실패는 인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혼자서 통과시키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일단 늘었고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변호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마약 범죄 같은 민생범죄도 또 동시에 늘었어요.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한 거고요.

개혁이라고 부르려면 국민에게 일단 좋아지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혈세를 아끼든지 효율성이 올라가든지 공정성이 좋아지든지 해야지 개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번 검찰 4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셋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바뀌는 거는 중수청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님, 추석 전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지금 중수청에 인력은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듭

니까? 간단히 인력 숫자와 예산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일단은 지금 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소 기능하고 수사 기능을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숫자 딱 얘기해 보십시오, 인력.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추석 전이면 지금 2개월 채 안 남은 것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행안부의 담당하는, 행안부를 대표해 왔던 조직국장 자체가 중수청의 연간 예산이 국민 혈세인데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인력이 얼마나지도 모르잖아요.

몇 개의 중수청이 설치됩니까?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일단은 중수청하고 지방청……

○**주진우 위원** 몇 개,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지방청하고 두 단계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주진우 위원** 두 단계인데 몇 개 청인지 모르시지요?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6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인력은 얼마나요? 인력 숫자 아마 추산이 안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인력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못 했지만 일단은……

○**주진우 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정확히 산정도 안 하고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다 대답 못 해요.

지금 이게 보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중수청이 다릅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릅니까, 아니면 공소청이 다뤄서…… 그 무혐의의 당부에 대해서 누가 따집니까? 모르시지요? 아실 수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구체적인 절차는 작용법에서……

○**주진우 위원** 아니,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 4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검찰 4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합니까, 공소청이 합니까? 모르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알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정확하게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모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으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조직국장 이창규** 지금 현재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 4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모르시지요, 그것도? 저는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안부를 대표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조직국장님조차도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로 인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다 대답은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통과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진아 교수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의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법률비용이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차진아** 제가 일선의 변호사, 저는 변호사 업을 하지는 않아 봤는데요 일선의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복잡한 경제사범들, 특히 횡령, 배임이나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들은 일선 경찰들이 이거를 수사하는 게 너무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졸업한 그런 변호사들이 가서 수사를 그냥 해 준답니다, 이렇게.

**○주진우 위원**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는 검찰보다 더 세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권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술인 차진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은요 정치적으로 계속 출세 욕구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실세 그리고 측근 인사, 친인척, 가족에 대한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대 정권마다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안의 문제점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중수청이든 국수본이든 경찰청이든 이러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찰들이 이런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못 합니다. 경찰이야말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어느 경찰이 그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를 감히 개시합니까? 그런 예를 한번,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 생각나시면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혁하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시나.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반대 방향으로 이 법률안들을 그렇게 짜셨는가, 그것이 혼법학자로서 너무나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용민 위원** 조금 전 질의에서 이 법이 돌아가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행안부 조직국장님이 답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지요,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직법을 먼저 확정 짓고 그 조직법 사이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수사 절차, 형사소송 어떻게 될지는 2단계로 확정 짓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조직을 확정하면 그 조직법의 유예기간 내에 운영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논의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일당 독재 만들려고 한다는데 내란당 독재 만들려다가 실패해 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분명하게 지적하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치권력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기득권을 강화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권력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데 만약에 정치권력이 지금 상태에서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검찰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 인사 막 다 집어넣고 해서—야당은 계속 야당 탄압한다고 하는데—수사하고. 그게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개혁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신 분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사가 보복기소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 이 사례 말고 다른 해외에서 공소권 남용 인정된 거 아는 사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주요 선진국 아는 나라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님, 검찰국장 검사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기조실장 검사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기조실장 검사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무실장도 검사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입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다른 주요 선진국에도 법무부가 이렇게 검사로 주요 보직이 다 돼 있는 나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진술인 김종민** 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전부 다 판사·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해요.

○**김용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보직을 다 하고 그 나라에서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진술인 김종민** 대통령이야 안 됐지만 법무부는 원래 검사들이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진술인!

○진술인 김종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김용민 위원 변호사님.

○위원장 추미애 진술인!

○진술인 김종민 판사들이 전관해서 다 검사로 근무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진술인!

마이크 꺼 주세요.

○김용민 위원 변호사님.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 꺼 주세요.

진술인, 지금 법사위원들이 진술인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데 굳이 언성을 높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정정하더라도 목소리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김용민 위원 지금 역사가 달라요.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사들이 이제 정치집단이 됐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배출하고 그다음에 정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생 손 다 놔 버렸고, 이런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으니 이거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지금 검사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 합니까? 지역상권이, 골목상권이 다 망합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들어 보면 검사 없으면 진짜 대한민국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정치 둘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정치집단이 됐고 대통령 배출하고 내란 저지르는 데 동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는데 왜 다른 얘기를……

○진술인 차진아 위원장님,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해산 제소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까?

○진술인 차진아 그것은 절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해산 청구할 때 당연히 심의해야겠지요. 그런데 해산 사유가 없어도 심의해야 되냐고요. 아니지요?

또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차진아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좀 짚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에 사면, 감형, 복권이 있는데 항상 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검찰총장 역시 심의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심의를. 검찰총장이 반드시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진술인 차진아 검찰총장은 필수기관입니다.

○김용민 위원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진술인 차진아 필수기관이고 그게 지금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을 상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은 교수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인 차진아 지금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생긴……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많고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인 것뿐이지 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진술인 차진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용민 위원 그러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술인 차진아 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폐지해도 됩니까?

○김용민 위원 감사원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요.

○진술인 차진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인 차진아 검찰총장도 검찰청을 전제한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은 교수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술인 차진아 그거야말로 위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헌법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진술인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영장청구권이 독점되어 있고 수사·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이지요?

○진술인 한동수 그렇습니다.

○진술인 윤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또한 기소독점권으로 또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사건을 암장하거나 사법정의 구현을 방해해 왔던 검찰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마지막으로 김용민 위원님처럼…… 너무 과도한 권한을 통제 없이 행사하다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서 사람들의 선거로 선출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검찰 쿠데타였던 겁니다. 또 그것이 견제받지 않은 상태로 12·3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라고요.

이 자리에 법무부차관님 계시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임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모두 다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대상인 상태 아닙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온 국민이 조속히 이 내란이 수습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온 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들로부터 그런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물론 각론에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선택일 뿐이고 결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는 것은 노력은 가능하나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반복된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인들께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한 자세, 국민의 여망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 이후에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용민 위원님과도 차진아 교수님께서 잠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하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이렇게 명시한 것을 총통, 인민회의 이렇게 법률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또 감사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차진아** 헌법기관의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헌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행정·사법 이런 권력분립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감사원은 헌법에 설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 위원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도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봐서 권한쟁의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관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인이 예를 든 국회나 또는 대통령, 심지어 감사원 이런 독립성이 명시된 기관과…… 공직자로서의,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의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차진아**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위원장 추미애** 그것이 아마 이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술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술인 차진아**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아니, 됐습니다.

○진술인 차진아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하고 다르고요.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회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됐습니다. 위원회……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고요.

○진술인 차진아 그래서 저한테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 있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추미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위원장은 나경원 위원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만 회의장에 제시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경원 위원 일단 아까 신상발언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신상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신상발언을 3분 넣어 드리세요.

○나경원 위원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께서 당연히 상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말도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교섭단체, 우리 당이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각 교섭단체별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간사가 중요하냐? 회의를 하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회의 일시 그리고 안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국회법 49조입니다. 사실

지난번 회의, 오늘 회의 다 국회법 위반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7조 8항은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48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원회 위원 배치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청, 주진우 위원을 1소위 위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것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멋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위원들은 의제에 관한 토론을 무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토론을 종결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국회 운영 어떻게 하셨습니까? 1명씩 하는 시늉만 하고서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 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박지원 위원** 반성 안 했네. 위원장, 반성 안 했어요.

○**곽규택 위원** 들으세요.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아예 틀어막습니다. 입틀막 법사위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한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하나도 안 준다 그러더니 우리가 퇴장하고 나니까 모든 위원들한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해 주고, 그러니까 위원들 뭐 했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내란 앞잡이라느니 나빠루라느니 이런 허위사실, 현재에서 내란행위를 인정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윤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장경태 위원** 그래서 내란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5선이나 돼서?

○**박준태 위원** 말 가려서 하세요.

○**나경원 위원** 국회 정상화해 주십시오. 의회 정상화해 주십시오. 절차 민주주의 지켜 주십시오.

보십시오. 19대·20대·21대 상임위하고 소위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19대 때 10건, 20대 때 7건, 21대 역시 63건, 22대 때 113건이나 강행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오전에 하신 ‘5선씩이나’ 이런 말로 제가 꼬투리 안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발 간청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이상한 이런, 국회에 이상한 관행을 만들었는데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서 회의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위원장 추미애 우선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회의 진행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군요……

(장내 소란)

들으세요.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시거나 하면 제가 또 경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해당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허가하고 그 기회에 발언할 때 발언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사태가 생기면 체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제가 2회 이상 위반을 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방해 책임을 물어서 퇴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이 여기에 사보임되시기 전에 귀 당에서는 분명히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책임하게 귀당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결위에 들락거리는 등 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정해졌으면 특정 당에 끌려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법사위가?

더군다나 간사 선임은 어느 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상호 간의 협의정신을 존중해서 위원 가운데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위원은 바로 피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시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을 향해서 초선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고성으로 초선 의원들을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위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한번, 나 위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비교섭단체 소속의 박은정 위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의 밤에 왜 계엄 해제하려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탄핵에 왜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관저에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려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수괴 접견을 하려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

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간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를 파탄내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회의 진행 똑바로 하세요!

○나경원 위원 답변……

○위원장 추미애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여야 해당 초선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저한테 답변하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곽규택 위원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기회 아까 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초선 있잖아요, 초선. 여야 위원 초선 하라며! 하잖아요, 지금.

○박군택 위원 아니, 그쪽 초선은 가만히 계세요.

○이성윤 위원 반말 쓰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왜 반말을 해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가장 먼저 손 드신 이성윤 위원님부터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야 위원 하라면서요!

○박군택 위원 아니, 그쪽 초선은 가만히 계시고.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한 말이 ‘야, 초선’이라 그랬어요!

○박은정 위원 초선 맞잖아요!

○곽규택 위원 누가 아니랍니까?

○장경태 위원 초선이면 예의를 지키라고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앉으라고는 안 했어요.

○곽규택 위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저 처음 보고 하신 말씀이 ‘야, 초선’이에요, ‘야, 초선’.

○위원장 추미애 계속 떠드시겠습니까? 계속 떠드시겠습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신상발언 3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참으로 참담합니다. 5선씩이나 되는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반말 조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 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 있으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도덕성이 5배 높은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5배 더 섬기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온전히 사과하는 것이 5선 의원이나 되는 분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 주신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백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안하무인이니까 윤석열이 내

란 일으킨 겁니다. 이런 내란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명도 제대로 여기 와서 반성은커녕 두둔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 체크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들부터 체크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 그리고 윤석열을 엄호하고 다니고 구치소에 면회 가고 이런 나경원 위원은 헌법수호는커녕 헌법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입니다.

○**곽규택 위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맨날 내란 타령입니까, 내란 타령?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 체크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체크하세요. 백번 해 놓으세요, 백번.

○**이성윤 위원** 법사위는커녕 법사위원 자체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9월 중순에 있는 빠루 사건 결심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내란 특검 수사받기 쉽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니까.

저 박지원 위원도 재판받고 계세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빠루가 들었지. 어이, 나빠루!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 체크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누가 나빠루입니까? 박지원 위원, 빠루는 민주당이 들어 놓고서 무슨 빠루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박지원 위원님을 존경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성윤 위원** 만일에 나경원 위원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 저도 나경원 위원이 사과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의 혼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 나빠루 맞지.

○**나경원 위원** 나빠루가 뭡니까? 박지원 위원님, 그것은 면책특권 뒤에서 명예훼손하시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옆에서 발언을…… 조용히 해야 발언 기회를 드리지요. 계속 떠들고 있는데 무슨 발언 기회예요?

○**곽규택 위원** 제가 발언하면 돼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요, 옆에서. 그 옆 짹이나 좀 조용히 시켜요.

○**박은정 위원** 초선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과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비교섭단체 위원님 중에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께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국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내란 척결, 민주 헌정질서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느 당을 정당해산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저는 나경원 위원이 지금 여기 와서 간사 요청하신 게 개인적인 방탄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유,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에요, 유치하게. 참 수준 떨어지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체크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하세요!

○**최혁진 위원** 본인의 사법처리 이슈, 내란 동조 의혹자로서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 벌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얘기야,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무엇을 꺼내고 있어!

○**주진우 위원**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것 제지 안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최혁진 위원**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지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재판 지연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윤 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전 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제대로 알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발언 중단시켜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최혁진 위원** 저는 이 부분까지……

(장내 소란)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렇게……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를 중단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너무하잖아요, 이것은. 새로 오신 분이 오늘……

○**최혁진 위원** 너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데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최혁진 위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나가서 당당하게 의정관 가서 기자회견 하십시오. 의정관 가서 기자회견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혁진 위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한동훈 공소 청탁 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이 자리는 나경원 위원님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대회가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 법사위 간사 추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할 말이 있고…… 관련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여기 혼자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왜 지금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빨리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나경원 위원에게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명백하다고 발언을 했어요.

○최혁진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이 된다라는 게 개인의 방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이 정 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혐의한 말을 합니까?

○최혁진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란 쳐결과 민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근거 없는 이런 음해성 발언을……

○최혁진 위원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이 법사위원회의 간사를 합니까?

○박준태 위원 나가서 얘기하라고요, 나가서!

○송석준 위원 발언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최혁진 위원 시끄러워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시간 남았는데……

○최혁진 위원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발언 방해를 받으셔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56초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면 발언할 때 제지를 하셨어야지요.

○최혁진 위원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힘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를 난장판으로 만드시면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안 들으셨어요.

○최혁진 위원 제 발언에 불만 있으시면 제 발언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하세요, 별도로.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조용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 켜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실 때까지 다시 마이크를 켜지 않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나경원 위원 남편분의 재판 연기 의혹……

○위원장 추미애 아니아니……

○송석준 위원 그만하시라니까요. 발언권이 중지됐잖아요.

○나경원 위원 그것 맨날 하는 레퍼토리인데 의정관 가서 한번 하세요. 어디다 대고 지금……

○위원장 추미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저에 대해서 부당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조용히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제지해 주셔야지요.

○장경태 위원 저희는 들을 만한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저 듣고 싶습니다. 최혁진 위원님의 발언 듣고 싶습니다.

○조배숙 위원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진행 할 수 있게.

○조배숙 위원 지금 마이크 꺼졌으니까 얘기드리는 데 좀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가해자가 공정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곽규택 위원 무슨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장경태 위원 곽규택 초선님,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유, 장경태 재선님 무섭네.

○장경태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송석준 위원 발언하실 거예요, 좀 이따.

초선 발언 좀 주십시오, 좀 이따.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곽규택 위원 진행하세요, 얼른!

○송석준 위원 제가 그래도 22대 법사위 출범 멤버입니다, 출범 멤버. 여기 바뀌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제가 위원장님보다 먼저 법사위에 왔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그만해요.

○송석준 위원 제가 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너무 험한 발언을 하세요, 예의도 없고.

○최혁진 위원 아니, 초선이다, 처음 왔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송석준 위원 아니, 초선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데 도를 넘는 말을 하시잖아요.

○김용민 위원 위원님보다는 도 안 넘어요.

○송석준 위원 박은정 위원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선배한테 괜히 너무 심하게 결례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초선 소리 듣잖아요, 초선 소리.

○박은정 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회의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송석준 위원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56초 남았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발언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최혁진 위원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작게 차분하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계엄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내란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법사위원회에, 설사 야당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고 간사를 시켜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되면 본 위원이 직접 정당해산 요구를 이야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저는 지금 법사위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서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님들의 행태를 보면 무슨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님은 개딸들의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그걸로 떠 가지고 당대표 하고 나가시더니 그다음 오신 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또 나가세요. 연이어서 오신 추미애 위원장님은 간사 선임도 안 해 주고 야당 위원은 발언도 못 하게 하고. 도대체 정상적인 법사위원장이 한명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업기적인 무슨 컬트 무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면, 오늘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야의 간사가 있어야 의사일정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협의

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 모독했다 이런 것 가지고 간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평계를 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 오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이, 존경하는 5선의 박지원 위원님한테서 ‘야, 초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간사 선임까지 걸어 가지고 야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본인 좀 떠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 좀 하십시오. 빨리 정상적으로 간사 선임하시고, 조금 있으면 또 법안 심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간사 없이 이렇게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곽규택 위원 뭐가 유감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체크 백번 해 보시라니까?

○서영교 위원 너무 예의가 없네,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 지금 아무도 발언시간 아니잖아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그러지 말아요.

○곽규택 위원 뭐라고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그러지 말라고요. 예의가 없어요.

○곽규택 위원 제가 뭐 어쨌는데요? 무슨 예의가 없어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회의 방해하는 곽규택 위원님은 퇴장 조치합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방해를 해요,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방해했지.

○박준태 위원 다선도 반말, 초선도 반말, 왜 반말들을 하세요?

○곽규택 위원 무슨 반말을 해요, 제가.

○박준태 위원 반말했잖아요, 계속.

○곽규택 위원 언제요?

○박지원 위원 빨리 퇴장해!

○곽규택 위원 반말하잖아요, 반말! 5선은 반말하셔도 됩니까?

○박준태 위원 퇴장할 이유가 있어야 퇴장을 하지요. 뭡니까, 이게 지금?

○김용민 위원 퇴장하세요, 퇴장.

○나경원 위원 퇴장은 무슨 퇴장요! 국회의장이 의원들 퇴장시키는 것 보셨어요?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잘 원만하게 하셔야지……

○김용민 위원 법사위는 많이 했어요.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시라고 한 말씀이 회의 방해입니까? 지금 발언 내용 가지고 회의 진행 방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 발언시간이 아니잖아요.

○박준태 위원 어제는 다선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반말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초선 의원님이 선배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반말 조로 언행을 함부로 하고 그러십니까?

○곽규택 위원 반말한 적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뭔 말씀을 또……

○곽규택 위원 반말한 적 없어요.

○서영교 위원 거짓말까지 하시네.

자, 이제 퇴장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 퇴장을 제가 왜 합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퇴장을 합니까? 국회의장이 퇴장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원들 발언에 경고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데서는 다 퇴장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이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셔야지요.

○주진우 위원 아니, 간사도 없이 어떻게 계속 진행해요?

○이성윤 위원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퇴하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이 국회 상임위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정식 사과하시고 빨리 진행하게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렸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셔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쪽도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 우리도 주세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간사 선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많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시는군요. 회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님 대해서 여당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선 의원’ 발언이 나와서 기름을 부으셨지요. 곧 수사받으실 것 같습니다. 곧 암수수색 당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는 소리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랬던 분들이 무슨 민주당이 내란을 알면서 안 막았으니 방조라고요? 그게 내란 정당이 할 소리입니까? 특하면 민주당 보고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내란당이 그런 얘기를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법사위 간사로서, 아니면 최소한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오십시오. 적어도 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내란에 대해서는 단절하겠다, 절연하겠다 그리고 5선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십시오. 충분히

사과하고…… 지금 나경원 위원으로부터, 그 발언들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생각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저희에게 간사 선임해 달라는 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설사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간사 선임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간사로서 한 거니까 주지 마십시오.
- **주진우 위원** 아니, 간사는 여러 번 발언할 기회가 있어요?
- **곽규택 위원** 무슨 간사가 벼슬이에요?
- **주진우 위원** 간사가 벼슬입니까?
- **곽규택 위원** 간사가 큰 벼슬인 줄 아시고 계시네.
- **김용민 위원**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했지 않습니까? 다 균형 있게 맞춰 주세요.
- **김용민 위원** 간사가 했으니까 그쪽도 간사가 하세요, 그러면.
- **곽규택 위원** 간사 지정도 안 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김용민 위원** 다른 분을 간사로 하시라고요.
- **서영교 위원** 박은정 위원님 발언하세요, 순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 **서영교 위원** 박은정 위원님 차례예요.
- **주진우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왜 안 주세요, 발언권을?
-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까?
-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피해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준태 위원** 왜 주진우 위원님은 발언도 못 하게 해요, 항상?
- **서영교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 두 명 했잖아요, 두 명.
- **주진우 위원**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 발언……
- **서영교 위원** 두 명 하고 이쪽에 두 명 했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셔야지.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처음 하셨잖아요. 우리 쪽이 할 차례지요.
- 아니, 여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야당에서 한 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위원** 야당 두 사람 했잖아요, 야당 두 사람.
- **주진우 위원** 아니요, 그때 신상발언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 **장경태 위원** 지금 전 국민들께서 법안 토론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간사 거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가 공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주진우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한쪽에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 장경태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추미애** 회의의 수습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김용민 간사의 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43분)

-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8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넘어갑니다.

3항을 봐 주십시오, 3항 및 제4항.

---

##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5시46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법무부장관님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법사위 결산에서 국회는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 국회의 공식 요구였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최대한 제출하라고 제가 지시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제출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특히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다 공개하고 일반에 공개 할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하고 열람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방금 뒤의 검찰국장이 장관님께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답변은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법원 판결과…… 고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에도 해당 조치를 완료한 바가 없고 또한 지난 8월 21일 행정법원으로부터, 대검이 23년 6월 이후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추미애 검찰국장도 알고 있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항소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국회와 국민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저런 형식논리 편을 염호하실 것입니까? 이번만큼은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시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일관되게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도 법무부에 또 검찰에 그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관련해 갖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금 국회에 자료도 안 내셨고 항소 포기하겠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산 심사 이거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경태 위원** 보고까지는 받으시고 의결 여부는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존경하는 법사위원회 여러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으며 각 기관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경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기타직보수 연례적 전용 지양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령해석 회신율 및 신속성 제고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집행률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검찰 특활비 자료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검찰 특정업무경비 자료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등 총 4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 특활비 관련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을 일부 제출했습니다. 미흡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남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551원을 특활비로 지급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털어 쓰거나 설 또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전국 검찰청 67곳 중 39곳에서 특활비를 지급하거나 12월 한 달에 월평균 2배 금액을 집행하는 등 연말과 명절에 특활비 예산을 몰아 쓴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내역은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대

부분 특활비는 명절이나 12월 연말에 집중되는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는 연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12월 3일·4일·5일·6일 단 4일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무려 45%를 지급했습니다. 내란 당일 일주일 전후로는 검찰총장이 지급하는 1년 특활비 총액의 14%가량을 전폭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법사위가 내란 당일부터 4일간 그리고 내란 전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위배되는 국내여비 예산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전용과 관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미제출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내역변경을 통한 증액 후 불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결산보고서 작성 시 오류 방지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2025년 9월 20일까지 국회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6개 기관 심사 과정 중 유일하게 감사원 결산 심사에 징계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비목에도 없는 G20 감사원장회의에 국외출장비를 집행한 건입니다. 이 회의 출장은 애초에 감사원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반려되어 전액 삭감된 비목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총 84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국외업무여비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자 타 사업 감사활동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국외출장비로 7000만 원을 전용해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 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소위 위원들은 기재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 마지막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출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였고 그다음 제출한 자료는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는 G20 감사원장회의로 전용한다는 사유가 빠져 있는 허위자료였습니다. 정리하면 비목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법사위는 징계 요구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까지 강력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은 특활비, 특경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여서 저희가 일단 결산 심사를 소위원회 차원에서 종료하였고요.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사용내역도 다 제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이상 결산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결산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최재해 감사원 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님,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처음 출석하신 손인혁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은 서툴러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실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섯 분이시네요.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조건을 해 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특검이 특활비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특활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께서 특검에도 특활비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저희가 정치적 래토릭하고…… 적어도 법사위에서 회의를 할 때는 법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끝마다 ‘내란’ ‘내란’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몇몇 위원들께서 현재 결정문에 내란행위는 확정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내란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계엄의 헌법 위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내란몰이를 하시는 경우 또 저희 당에 대해서 툭하면 정당해산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쓰신 것도 꼭 그렇게 쓰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02조에 있고요. 이것은 거듭거듭 여러분께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것을 왜 위원장이 판단합니까? 특활비 얘기가 있잖아요. 특활비 얘기가 연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민주당 위원이랑 똑같이 하셔야지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진행해 주셔야지요. 꼭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만 그렇게 지적을 하시네.

○전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위원장님이 저런 말씀도 못 하십니까? 내란을 내란으로 하지 말라는 요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확정이 돼야지요. 내란이 확정됐습니까?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법조인이라면 1심 판결까지…… 1심 판결 확정 안 됐습니다. 법조인 맞습니까? 검찰국장하신 것 맞습니까?

○이성윤 위원 보세요. 현재 결정문 읽어 봐요. 이게 내란이지 뭡니까?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살인범한테 살인범이라고 안 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는 살인 사건이라는 말을 못 합니까?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빨리 경고 주세요. 저기 왜 체크 안 하십니까?

○김기표 위원 아니, 퇴장하실 분이 왜 얘기하고 있어?

○위원장 추미애 퇴장하셔야 되는 위원님은 마이크 꺼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나경원 위원님께서 ‘내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사용을 자제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 규정은 ‘국권 침탈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권 침탈의 목적에 대해서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국권 침탈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을 침범해서 사실상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그런 12·12 사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은 내란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과 헌법의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러한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계엄 당일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적어도 내란죄의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

는 그런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각종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나경원 위원께서도 진정 법사위의 간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내란 세력에 가세한, 적어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한 그런 일련의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의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 본청에 집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고 국회 정문에서 뒤돌아서서 사실상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법사위 간사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태를 하지 않겠다, 적어도 그런 보장이 있어야 법사위에서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이것 주제랑 맞습니까? 주제랑 맞아요?

○**전현희 위원** 법사위는 사실상 자신의 사법에 대한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주제랑 맞는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주제랑 맞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제에 맞는 발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 예산에 대한 토론……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우리 예결소위의 김용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 추미애** 장경태 위원장이십니다.

○**송석준 위원** 김용민 소위 위원장님……

○**김용민 위원** 장경태 위원이에요.

○**장경태 위원** 제가 소위원장이에요.

○**송석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 하도 하도 요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조금 하려고 그립니다. 하나는 뒤에 하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 결산 심사 내용 중에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감사원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소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따져 봤는데 G20 감사원장회의로 전용했다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의도적인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삭제하는 안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장경태 소위원장님, 소위에서 그렇게 임의로 결론을 내셨지만 오늘 전체회의니까 감사원에 대한 결산 심사 결과에서 이 G20 감사원장회의 전용 관련된 허위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좀 낮췄으면 하는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것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경태 소위원장님도 예산결산소위를 시작하면서 지난 내란 정부에서 집행됐던 결산 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도 ‘내란’ ‘내란’을 아주 입에 달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법률 용어 아닙니까?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했다’, 배제한 행위가…… 일부 그게 비쳤지만 실제 국가권력이 배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헌 문란 행위의 내용을 91조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잖아요.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예요. 물론 당시 비상계엄 행위가 일부 그렇게 비쳐진 면도 있지만……

**○전현희 위원**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내란이라고 규정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판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여기에 대법원 행정처장님도 계시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여기서 단정을 해서 건건마다 ‘내란 정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내란’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선전·선동꾼들이 하는, 소위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시정잡배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적어도 양당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법사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란’이라는 수식어를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쓰는 것을 제발 지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도 다시는 그런 언행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법치주의는 살아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뛰어난 탄력성으로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발 법사위에서 우리가 과도한 불필요한 또 무모한 이런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동료 위원들께도 호소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도 강력히 질서유지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자리는 국민의힘당의 당내 회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장도 아닙니다.

내란은 분명히 있었고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해야 될 소관 부처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방금 안 들었습니까? 예결산소위에서 ‘내란 당시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다’, 심사한 것 안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특활비가 명절이나 연말에 집중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월 3일·4일·5일·6일 단 4일간에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 무려 45% 지급했다 이렇게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시고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란’ ‘내란’ 소리 듣기가 쉽으시다면 빨리 내란 청산 할 수 있게 협조나 하십시오.

(장내 소란)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판사 출신께서 이렇게…… 내란에 대한 법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정면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적 없잖아요.

○**이성윤 위원** 내란 때문에 파면됐잖아요.

○**송석준 위원** 거기다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갖고 참고해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합리화하고 두둔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법사위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법 좀 아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송석준 위원**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내란’이 잘못된 용어라고.

○**김기표 위원** 송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내란이 너무나 명백해서 앞으로 ‘내란’이라는 말을 계속 당연히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예결소위원회 장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G20 회의 있잖아요, 그게 원래 예산안 세울 때부터 항목 자체를 없애 버렸고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예산을 계속 전용해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는 기재부 정부 예산 편성할 때……

○**김기표 위원** 그때 없었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때 전체적으로……

○**김기표 위원** 알고 있었느냐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모르고……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텐데 몰랐다는 건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산 규모 얼마 신청한 게 전체적으로 얼마 깎였다 이런 것은 보고를 받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G20, 다음에 가기로 되어 있는 이 행사,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그 행사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지금 아예 예산 세워지지도 않은 항목을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편법을 동원해서 세웠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허위자료를 예결소위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감사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허위자료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김기표 위원 허위자료 제출한 것 맞습니다. 거기 내역에, 그것도 12월 30일 날 기재부에 제출한 그 자료 가지고 했는데 G20 그 내용은 없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좀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기표 위원 감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권 형해화시키고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은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 팔천 얼마 국고를 써 가면서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을 져야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책임을 지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김기표 위원 수사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감사원장 최재해 하여간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국가는 불필요한 소송은 하지 않고 특히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을 생각할 때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도 포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활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저번 인사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가의 기회적인 상소가 문제 아니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빨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배상금을 지급하는 국고 손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다행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법무부에서 결국 결단하셔서 상고를 취하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그 당시 위원님의 지적이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문제는 배상금으로 산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원고들한테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예산에 남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안을 꼼꼼히 봤더니 일단 올해 배상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1310억 6500만 원이고 아직 이·전용은 없는 상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29일 기준 배상금 미지급액은 10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별씨 1028억 원이나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결산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예산 모두 사용한 다음에 74억 원을 또 이·전용하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상금이 결정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고들한테는 바로바로 배상을 해 줘야 원고들도 경제적인 어떤 이로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연 12~15%에 해당하는 자연배상금을 안 물 텐데, 지금 일단 예산 추계가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면에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사건들의 소가라든가 또 예상되는 판결 금액들 이런 것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전부 '청구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 하루하루…… 돈 있는 사람들이야 몇 달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문제니, 예비비 편성하면 또 연말까지 가거든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완,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장경태 예결산위원회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 12월 3일부터 나흘 동안 3억이 넘는 특활비를 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계엄 당일 3일, 4일, 5일, 6일 등 이렇게 특활비를 집중해서 살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 오남용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통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정보활동에 필요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특활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나흘 동안 3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지금 계엄이 공포되었는데 특활비가 나갈 시점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검에서도 이게 과연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의 보전인지, 그런 소요에 필요한 집행이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대검 자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의 집

행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받고……

○**서영교 위원** 심우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 지귀연이 구속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즉시 항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헌 운운하면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입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즉시 항고가 위헌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당시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즉시 항고하라는 취지로 그와 같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즉시 항고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와서…… 심우정, 국민 앞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 그리고 당시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즉시 항고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살짝 바꾸긴 했지만 위헌이라고 제가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찰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쓰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석·설날 떡값 형태로 쓰였던 것 이제는 한번 털어주셔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국민주권정부하에서는 정말 특활비가 단 한 푼도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우리 예산 중에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사보상금 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그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전용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

○**서영교 위원**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전용하고 있고 그 형사보상금,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나오면 지금 얼마 돌려줍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가 사안을 보고 무죄의 경위라든지 구속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변호사 비용으로 3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맞습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변호사 한 번 쓰는 데 얼마는데 30만 원, 무죄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30만 원,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검토하셔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 내렸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보상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무리한 기소와 무리한 수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가져오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공감하고 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드릴 건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저희가 특활비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는지 장관님은 안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몇 달 동안 안 오고 있다가 결산 의결 하루 앞둔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날짜하고 금액만 있는 황당하고 의미 없는 그런 문서들만 갖다줬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25년 하반기 40억 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저는 단 한 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흘 동안 3억 사용한 것, 그러면 이것은 장관님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구체적으로 못 받으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3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흘 동안……

○법무부장관 정성호 3억 4200이라고……

○박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명, 두 명 이렇게 뭉칫돈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뭉칫돈은 내란에 관여한 종사자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대검의 과수부하고 방첩사하고 서로 소통이 있었는지 의혹,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런 부분에 관여된 자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과연 이게 통상적인 수사 소요에 따른 집행인지 아닌지는 대검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통상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게 4일 동안 3억 4000이어 가지고 이것은 월 평균 지급액을 4일 만에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란과 관련 있는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1차 징계위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 전날에 2억, 그때도 3억이 그냥 현금으로 검사들한테 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당시에도……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뭔가 좀 평행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이게 주로 검사들 밥값이거든요. 밥값인데, 어떤 특수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무슨 돈인지가 되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면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되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특활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변상하고 또 감사요구까지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까지 공개됐을 때 수사나 정보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전체 결산 과정에서 보면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제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군이라든가……

○**박은정 위원** 의미가 없는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 전체를 봤을 때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또 특검에 필요한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관님, 약간 동문서답 같으십니다. 정부 전체의, 다른 정부들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정부 전체의 다른 기준으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특활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고 지난 법사위원장, 전전 법사위원장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지요. 국회에 자료제출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는 국정감사에도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바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당부드린,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익한 그리고 반법치적인, 법치를 준수해야 될 법무부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항소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니까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특검의 특활비 제출 요구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토론합니다. 추가토론 좀……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 추미애 소위 위원장님은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송석준 위원 저도 같이, 아까 징계 건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추미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장경태 위원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어서 장관께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미흡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저는 어찌 되었건 현 법무부에서도 고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1~3월, 3개월 특활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급 건수, 지급액이 높은 수를 따지면 1번 수령인 302번, 3개월간 1억 8000만 원을 수령해 갑니다. 한 달에 6000만 원꼴로 수령했고요. 2위가 수령인 27번, 4940만 원, 26회에 달합니다. 3위가 수령인 115번, 4400만 원, 열한 번 왔다 갔습니다.

이분들 보면 저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남부지검장하고 전주지검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 자주 올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열한 번 정도 왔다 가고,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스물여섯 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검사장분들의 명단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지금 건수를 보면요 3개월밖에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수령인 27번은 3개월 동안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특활비를 총 5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갑니다. 수령인 160번도 스물여섯 번, 3일에 한 번꼴로 400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수령인 266번은 열일곱 번, 26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로는 거의 최소 5회 이상 수령인이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해당 12월 3·4·5·6일도 그렇지만 이 수령인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특활비가 집중되고 또 횟수가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관께서 보고도 받으시고 장경태 위원께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이 됐습니다.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수령인 번호도 제기를 하셨고 몇 회 받았는지 총액수도 있고요. 상당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혹 제기에 맞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만 보실 게 아니라, 국회는 당연히 국정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소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왜냐면 소명을 좀 명확히 해 줄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장내 소란)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예산을 똑바로 심사를 해야지요.

○**박지원 위원** 그만해!

○**조배숙 위원** 왜 소리 지르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내역사업을 갖다가 비목을 요구하면 어떡해요. 동일 비목 내에 내역사업이 있는 건데 그 내역사업을……

○**위원장 추미애**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님, 손 드신 거예요?

○**송석준 위원** 아니,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남을 텐데 내역사업과 비목 사업을 구분 못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대한 소관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철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해석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절차 개선에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장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실한 심사와 그리고 의결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그리고 공정한 재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손인혁 쳤장님, 조원철 쳤장님, 오동운 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쳤장님께서는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1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 1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4건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4건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각각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건의 대안은 공통적으로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현행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된 관련 사건 또는 관련 범죄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자수를 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의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통사항 이외에 각 대안별로 개정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검사보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위의 두 대안은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지금 특검법안들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법안을 보면 심리 과정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헌법 규정에 보면 심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또 사회의 안녕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우리가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무죄 추정을 받는데 1심의 심리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증인신문 과정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다음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TV로 다시 청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말 맞추기 논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법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주진우 위원** 예, 말씀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단 저희들은 중대 국가 재판 사안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또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든지 또 사법절차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공개를, 재판 중계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09조에 있는 심리 비공개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안이 그와 같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더 재판의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의견을 좀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좀 사소한 부분하고 조금은 무거운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11조 4항 여기에 보면 공판준비기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쟁점 정리하고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절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오히려 이것을 중계하게 되면 충실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좀 차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에서 ‘공판 및 선고’로 고치든지 아니면 ‘준비기일을 제외 한다’는 규정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장 심문기일이라든지 보석 심문기일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법에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쪽 7항에 보면, 비식별조치 면제 그리고 면책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사건이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에 판사들이 또 직원들이 매번 개인정보나 또 국가기밀 등 비식별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다음 날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비식별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결국 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담당 직원이나 법관들이 비식별화의 오류 내지 불충분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형사책임 문제로 업무가 현저히 지체될 가능성도 높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민사소송법에 있는 면책조항과 같이 ‘재판 중계 관련 개인정보 등 의 비식별조치를 면제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이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된다’ 이런 규정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사소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저희 사법부에 유예기간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중계시설이라든지 전문인력 채용 이런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식별조치를 면제하고 그리고 기존 안에 나와 있는 대법원규칙 규정은 굳이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법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면 대법관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하면 1개월 이상 또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받아들여지면 공포 후 1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겠다라는……

**○주진우 위원** 세부적인 부분보다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위헌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래서 그게 세부적인 사소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조금 무거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109조에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헌법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각종 헌법 교과서라든지 행정법 교과서 또 국가권력규범론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란 특검법이나 또 지금 새로 추가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이 부분 위헌성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충실한 증언 확보에 장애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거부 사태가 첫째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소법 147조 등의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증언거부권자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고 하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자가 증언을 하도록 하

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과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소속원이 재판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나와서 증언했던 그런 경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의 실질적인 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헌법 109조 중계 예외 규정이 도입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는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동시에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 사건 피해자 혹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의 경우에도 중계에 따른 증언 거부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형소법 294조의3 이런 것을 보면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 때문에 증언 확보가 상당히 곤란해질 그런 우려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가령 이번에 비상계엄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라든지 또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해자의 어떤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식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중계방송의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서 재판이 사실상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실무상 저희들이 다수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게 되면 그다음 이루어지는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는 같이 나오더라도 좀 격리를 시키든지 해서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부분의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체적인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또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소한 부분에 관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의문 없이 이 부분은 간단한 자구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좀 무거운 주제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그리고 법률상의 또 재판 실무상의 충실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내란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새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 역시 도입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무슨 일을 안 되게 하려면 백 가지 이유가 필요한데 되게 하려면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게 지귀연 재판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때문에 이런 중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석열 내란 재판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조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12월까지는 재판계획이 다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증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이성윤 위원 증인이 520명이 넘어요.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명씩만 해도 520일이 걸려요. 2년이 걸립니다. 그때 윤석열 또 석방해 줄 겁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하도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든 협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분출하는 거예요.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특별검사 권한에 의해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딩을……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사유가 뭐예요? 경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나경원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빨리 퇴장하세요.

○곽규택 위원 경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경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경고한 다음에 조치를 하셔야지.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위원회 운영하지 마십시오.

○박규택 위원 경고 아까 많이 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한테 잘못 배웠네.

○송석준 위원 아까 전원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곽규택 위원 아니, 그렇게 경고도 안 하시고 발언 정지를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나경원 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규택 위원 아까 경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언제 경고했어요? 아까 체크하라고 했지.

○나경원 위원 아니, 편파적으로 하시잖아요, 편파적으로.

○박규택 위원 아까 많이 하셨어요. 본인 말씀하시느라고 안 들렸던 모양인데 많이 들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체크하라고 한 게 무슨 경고입니까? 한국말 할 줄 모르세요? 국어 모르세요?

○최혁진 위원 경고하시는 게 여기까지 들렸는데 거기가 왜 안 들려요, 바로 앞인데?

○곽규택 위원 체크하라고 그랬지 무슨 경고를 해요?

○박규택 위원 아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경고하셨어요.

○곽규택 위원 경고를 한 다음에 발언권 정지를 시켜야지.....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양당에 좀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상임위를 이끄시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사실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이의 제기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항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보다도 더하게 민주당 위원들이 항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하셨는데 퇴장하라고 경고 조치 하신 적도 없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하지만 유독 우리 당에 대해서 퇴장하라 그러고.

아니,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을 거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퇴장하라고 그려십니까? 그리고 또 발언권도 안 주시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입니까? 국회라고 하는 곳은 발언을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민주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화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화중계 이것은 온 국민한테 이것을 다 까발림으로써 결국은 어떤 선거용이 아닌가,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개정안 7조에 보니까요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군검사를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휘체계에 엄청난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이 보면 이첩을 받지 않아도, 이첩을 받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하는데 검사는 원래 지금 체제하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검의 지휘를 받게 됩니까? 이것은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위원님들이 결단하시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 충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원래 이것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 어떻게 또 검사뿐만 아니라 군검사까지 지휘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조배숙 위원** 군검사까지, 군사법원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특별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입법적 결단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이었던 자가 3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부인도 감옥 갔어요. 그런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가조작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지요? 어찌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저희들도 분석해 보기로는 적어도 12월까지 재판 계획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 쳐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재판부에서 지금 관련된 3개의 사건, 즉 조지호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또 윤 대통령 이 3개의 사건을 갖다가 같이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1개의 사건만 놓고 보면 마치 재판기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개를 다 합쳐서 사실상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면 최순실·박근혜 있을 때는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때도 필요한 사건은 병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병합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합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6월에, 7월에, 8월에, 재판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할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오기 전에, 3월까지 공판준비기일.....

○서영교 위원 그런 얘기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6월에 몇 번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6월 달에는 6월 9일 그리고 16일·23일 이렇게.....

○서영교 위원 몇 번 했어요? 세 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세 번, 그 사건만 따지면.....

○서영교 위원 7월에 몇 번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7월에는 7월.....

○서영교 위원 네 번, 8월에 세 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6월·7월·8월 비교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몇 번 했는지 화면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깜짝 놀랄 일인데요. 법무부장관님, 저 화면을 보면 박근혜 때 6월에 몇 번입니까? 재판 열일곱 번이에요. 7월에 몇 번입니까? 열다섯 번이에요. 8월에 몇 번입니까? 열네 번이에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6월·7월·8월, 17회·15회·14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 몇 번입니까? 세 번, 네 번, 세 번,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 결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특검 연장하고 검사 보강하고 그리고 파견공무원 보강하는 이 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이번에 재판 중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부가 국민 앞에 더욱 떳떳하게 투명하게 충실히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입법의 취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의 지귀연 재판부 재판 계획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이고 신속히, 충실히 그렇게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셔서 ‘이게 뭐냐? 나 가서 이런 소리 들었다, 도대체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 구속취소시켜서 법원의 신뢰를 뚫고 떨어뜨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다 또 윤석열 석방시켜 주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 가서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님, 답변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12월까지의 재판 계획은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판부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심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 이렇게 증인신문이 좀 이루어지고 자료가, 증거가 검토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재판이 스피드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재판실무 경험에 비춰 볼 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시민의 우려를 아시지요,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을 번번이 거부를 하고 또 최근에는 법사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겁박을 하면서 번번이 체포영장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한 명령이라고 교도관들을 겁박하면서 ‘불법한 명령에 따르지 마라’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광경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장은 이 내란범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로 재판은 이미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의 형사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범, 국사범입니다.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신속하게,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또 내란 수괴마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지지부진한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1심 법정 구속기한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석방을 노리지 않느냐 또 재판도 거기에 맞춰서 질질 끄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상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없겠느냐 하는 진지한 고민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느슨하십니다. 좀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에 전체 재판 중계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만 좀 수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늘 재판의 투명성·충실성을 더욱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까 행정처장님께서는 신상 노출 또는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정보사를 예로 드셨는데요. 그 정보사에 바로 불법 수사단이 꾸려졌던 것이고 내란을 성공시켰더라면 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민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검이 거의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재판마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감시가 없는 거예요. 언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또 예를 드시면서 ‘정보사 같은 경우는 보호돼야 된다, 아니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국민 위에 헌법이 있습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이익이 지켜지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 결정, 지난 3월 8일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고 비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법관의 어떤 전체적인 독립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법관의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 이런 부분은 심급제도에 의해서 걸려지고, 물론 그 판사가 그때했던 판결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판결이 그 판사의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내린 결정 또 판결 이런 것에 기초해서 법관에게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법리상으로는 허용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건 너무 법관 중심적인 생각이시고 판결은 심급제도에 의해서 다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중대한 비위,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따른 파면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찰하거나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시고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법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기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소법상 기피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절차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란 재판이 위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중대한 재판이라서 아마 저희들은 이 재판이 어쨌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결론이 속히 나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귀연 재판장이 결론을 빨리,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안 하고 있어서 기피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피 사유, 기피신청서에 적시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고 해서 재판 사항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신속하게 기피신청을 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 사건을 더 이상 재판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특검 제도는 일반적인 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특별한 제도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주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고 가급적이면 국가의 기본 검찰 제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중요한 사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이 특검이 기간 내에 제 소명을 다 못 한다는 이유로 인원을 대폭 늘리고 또 기간도 한 달 이상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또는 이런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애초에 기존의 검찰 조직에 맡겼다면, 기존에 하던 특검도 빨리 수습을 하고 정상적인 조직에 의해서 한다면 훨씬 더 기존의 유능하고 잘 훈련된 그런 조직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랑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기존 조직은 다 무시하고 특검, 특검,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비정상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사건의 부실화는 더 강화될 거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아시잖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검찰개혁 있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공청회도 했지만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검찰개혁 방향에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특검은 또 그거하고 역방향이잖아요.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된 특검에서 모든 걸 수사하겠다고, 이건 검찰개혁의 명분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 특검으로 인해서 일선의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이 또 차출이 되고 검사가 차출이 돼서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우리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제 사건 증감률이? 이게 특검 출범 이후에 무려 30% 이상, 특히 남부지검의 경우에는 무려 4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검, 특검 한다고 하면서 예산 낭비 그다음에 또 일반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민생 파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도 상당 정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당시의 검찰총장도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형사사건에서 지연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특검뿐만이 아니라, 특검 문제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변화 과정이 지금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부 지연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또 특검 연장으로 122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타들어 가는데 그런 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낭비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요. 제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민생 살피는 데 이제 법무부도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이라든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수사 역량을 좀 보강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제대로 된 검찰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특검, 특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재판 중계 논의가 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국민들이 죽을 뻔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이 직접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초를 써서 남겨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합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책규정 같은 경우는 집어넣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식별조치에 대한 정의 규정은 법원행정처 의견에서 저희가 정의 규정을 조금 더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고, 중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1심 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저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 중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판과 그다음에 선고 정도만 남는 것이겠지요. 그런 정도에 대한 중계를 하는 것이고.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에는 헌법 109조를 지금 행정처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는데요 109조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재량이잖아요. 법원이 이럴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피고인에 대한 권리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국가안보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는 이 내란으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1심 재판은 중계한다’라고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넣어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절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제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예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경과규정은 1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면책규정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비실명화에 대한 면책규정은 이번에 저희가 같이 개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해서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내용,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12·3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바로 며칠 뒤에 법사위에 와서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와 같은 판단이 옳았다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사법부에서도 이 비상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비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재판이 정말 어떤 헌법적인 이슈도 없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혹시라도 이런저런 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사소하지만 실무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증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재판 실무상으로 차단막을 하고서 증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재판 실무 과정에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저는 특별재판부, 특별법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검, 수사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저희들 기술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오늘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시지 말아야 될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는 다른 형사상의 내란죄에 관한 재판을 하는데 마치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특검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기한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무기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무슨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지귀연 판사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귀연 판사가 오로지 재판을 7월 달에 세 번, 8월 달에 세 번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건도 가지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행하는 사건이라든지……

○나경원 위원 다 몇 번 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결국 계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계속 재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재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3건’ 한 것을 가만있으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오셔서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CCTV 열람한 것이 지금 시중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부분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저희들이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와서 열람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게 공개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나경원 위원 아니, 강제조사 이런 운운하지 말고 서울구치소가 법무부 소관 사항이라고……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법사위 권한 밖의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에 관한 소관 사항은 법무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출 경위 조사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 있으면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 구치소 내부에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되어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위원 세 분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두 분 그리고 비교교섭단체 한 분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1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59)
  -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4)
  - 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7)
  - 2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96)
  -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2)
  -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8)
  -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0)
  -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6)
  -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7)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1)
  -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4)
  -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1)
  -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4)
  -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2)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3)
  -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1)
  - 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9)
  -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 36.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3)
  - 3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1)
  - 3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 3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5)

4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6)
4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7)
4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8)
4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4)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5)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8)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4)
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6)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5)
5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0)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0)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6)

(17시53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8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34항까지 17건의 법률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시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여 외국 국적 동포에게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만 국적과 관계없이 동포 체류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할 경우 출입국 관리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반도체 등 관련 해외 고급인재에게 특별사증을 발급 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만 사증발급 특례가 개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그동안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출입국관리법에 특별사증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3쪽, 의사일정 제20항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분도 면밀히 점검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4항·26항·27항 정일영 의원·주철현 의원·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 시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만 승낙을 요하지 않는 범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등 1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 송달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전달할 경우에 도달 간주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도달 간주의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2항까지 서영교 의원, 이성윤 의원, 박희승 의원, 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보석 조건 위반 시 등에 심급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만 구속 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시에는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이 제한되는 측면과 공익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목적과의 비례성 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구치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됩니다만 헌법상 영장주의 관점에서 입법을 통해서 수사기관 출석을 강제하는 부분이 헌법과의 관계에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수용자가 거부할 경우 교도관에게 강제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역시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수용자의 거부라는 소극적인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신설 법원의 예상 관할 인구, 사건 수,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 및 고문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문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일괄 구제를 위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인 고문의 정의, 유족의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위원회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6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회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내란·외환 등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20대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당시 해당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견해는 첫째, 개별사건 법률 또는 처분적 법률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둘째, 기존의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 재판의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견해는 첫째,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 대상 사건이 기소된 날 이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더불어 기존의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8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법 등 개정 논의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증인이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집행증서 작성 시에 실제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도록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의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증인의 거래사실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촉탁 대리권의 제한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러한 방법이 채무액 부풀리기나 대리 촉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 통수권자와 반란의 죄 등을 범한 내·외국인에 대해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되므로 헌법 제27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정보를 추가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피고인 등의 재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사용인의 개념에 원격운항자를 포함하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로 자율운항시스템의 결함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을 원칙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입증책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명부 기재 사항에 전자메일 주소 등을 포함하고 개별 주주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인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한도액을 2024년 12월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에 맞춰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 중 어느 한 곳이 협약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피해

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법정형과 비교해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만 현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 범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사건 중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 아동학대범죄사건 전체의 통일적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정 제49항부터 제52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손해의 종류와 무관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로 확대하고 위자료 지급 결정 시의 고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외의 명예·자유·재산 등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독립된 위자료 청구권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배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손해 유형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범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담보권설정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 분야의 경우 폭넓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많은 농어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게 되면 농어업인들이 필요한 경우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법률에서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도 악용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안 주신 것 좀 주십시오, 아까 토론 끝나고 주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추미애 대체토론 후에 위원님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추가로 최재해 감사원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지원 위원 1차 보도자료에는 ‘박지원이 주요한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삭제 지시’라는 말이 삭제됐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삭제됐다기보다는…… 예, 하여간 거기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박지원 위원 없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 윤석열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고발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 국정원장이 감사를 시켰는데 감사 결과 지난주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지원이 삭제 지시한 SI 문건 등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다. 메인 서버에도 남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문건을 활용해서 국정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만 갖고 제가 유무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그런 반증들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한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제시도 안 받고 또 우리 변호인이 그러한 문건을 재판부를 통해서 국정원에 요구하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희 변호인이 재판부를 통해서 국정원의 감사 조력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은 만약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줄 수 없지만 재판부를 통해서 요구를 한다고 했으면 준다고 그랬어요, 제출한다고. 그러면 삭제 지시했다는 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면 또 그러한 문건이 현재 국정원의 실무자들이나 메인 서버에 있다고 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좀 더 빠른 방법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지요.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제출되면 검찰에서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죄 없는 피고인들은 4대 권력기관에서 정치공작으로 고소한 내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증거들이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의 공소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추미애 대체토론……

○조배숙 위원 끝나고 주시겠어요?

○위원장 추미애 아니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 마치시고 나중에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직접 법사위에 상정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이 됐는데,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장 중요한 잘못은, 굉장히 문제는 특별재판부 구성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이요 보면 이게 국회·법원·대한변협,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2배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대법원장이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또 제외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원행정, 이 사법행정에 있어서 재판부 구성은 사법행정이란 말이

지요. 그렇지요? 이 사법행정도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게 사법행정에 대한 침해고 결국은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그랬고 지금 이 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위헌적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보니까 지금 검찰도 특검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검찰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자기가 원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또 재판도 지금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지귀연 판사 인사조치를 하면 이 법 철회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은, 결국은 판사·재판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맞으니까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사실 특별재판부는 과거 볼 때 이것은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제헌의회에서도 그 엄중한 시기에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니라 제헌헌법 부칙에 특별재판부의 설치 근거를 두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엄중한 국가재난 시절에도 역시 개정 헌법 부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앞선 모든 선각자들께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현행 헌법 역시 군사법원만을 갖다가 유일하게 특별재판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5일 날, 8·15 때 저도 대법원장님 모시고 국민임명식에 갔습니다. 그때 팔십 분 국민들 중에 한 분의 목소리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울림을 저는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구성·운영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법원과 법관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헌법 체계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 국회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법관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잘 살펴서 지혜로운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정말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라드브루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치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합법적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최소한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최근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입니다. 당시의 이 사건을 보면, 통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994일이 평균 심리 기간인데요. 이 사건은 3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알재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 현재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두 번째 사례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 사건입니다. 앞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속전속결 재판을 했는데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은 그야말로 느릿느릿,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실상의 지령이 속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140일에 겨우 열여섯 차례 열렸고요, 박근혜 국정농단의 경우 아까 서영교 위원님 지적했지만 당시에 280일간 116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재판을 비교해도 지극히 재판부의 사건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구나 지극히 재판부, 사상 초유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 산정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런 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판사가 내란 재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의 대법원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 위반 소지는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대법원만 규정이 돼 있고 각급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의 어떤 자율성을 믿고 그 안에서 심급제를 통해서 또 연임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법부를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자정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요.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비교섭단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해 원장님,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대통령이 2022년 7월 국정원에다가 고발사주를 한 거거든요, 수사 의뢰하겠다는 국정원에게 고발해라. 이 사건이, 이 첨보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무고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삭제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윤석열 검찰의 정치수사·정치기소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이 무고한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금 공판검사가 법무부, 검찰에서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내란 수괴, 정치수사를 했던 이 검찰정권이 얼마나 무고한 기소를 했겠습니까? 고발사주 사건도 있었잖아요. 고발사주·기소사주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 무마, 수사 은폐, 불기소, 이 와중에 김건희라는 사람은 2022년 7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구속된 범죄사실을 보세요.

이런 내로남불 정권이었는데 윤석열의 이 범죄행위, 이것은 범죄행위거든요. 보고서 삭제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사주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러한 고발사주·정치수사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하고 전부 다 기소해 가지고 전부 심판을 받아야,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무고한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도 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고의,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좀 안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언이 위축되는 상황 같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어 주십시오. 법원을 믿어 주십시오. 법원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해치진 않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은 뭘 하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도 12월까지의 재판 계획을……

**○서영교 위원** 아니, 보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왜 그러세요? 왜 법원은 대책을 안 세우세요? 그러면서 왜 법원을 믿어 달라고만 하세요? 믿기세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박근혜 때 한 달에 열일곱 번씩 하는데 지귀연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해요.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다른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도 다른 게 많은 것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믿어 달라, 당연히 법원 믿어야지요. 법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왜 안 움직이세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또 미뤄져서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역사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법원행정처장님의 법원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법관의 자격은 뭐로 정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에 뭘 근거를 두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서영교 위원 대법원에 근거가 있지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저렇듯 지귀연 재판부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안고 있지요?

룸살롱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지귀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저희 윤감실에서는.....

○서영교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뭐 하세요? 일반인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게 두실 거예요? 왜 자기 감싸기만 하시지요? 룸살롱 가서 650만 원의 향응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명확한 어떤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 조치가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가는데 이러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혐의 사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손이 안으로 굽는군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법원행정처장님과 법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귀연 재판부를 바꾸셨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대로 윤석열을 그대로 풀어 줄 상황이십니까? 그럴 생각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럴 생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했고 저는 재판에 임하는 모든 법관들이 역사 앞에 자기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게 지내 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모든, 지부장을 제가 재판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 역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대책을 만드시고요. 그러셔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고민을 지금 몇 개월째 하십니까? 대책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무슨 토론 종결이에요, 지금? 우리 손 들고 있는데 지금 무슨 토론 종결을 해요?

○주진우 위원 저 추가 토론할게요.

○이성윤 위원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 토론 신청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다 발언권 주세요. 지금 주진우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이것은 논의할 시간 많으니까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3분 하기로 한 게 다 하기로 한 것인데, 3분 하면서 다 하기로 했는데 무슨 토론 종결을 해?

○김용민 위원 각각 것이지 이것은 아니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3분 하기로 했잖아요. 3분 하는 게 누구든지 다 하자고 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한 분, 한 분씩 더 하시지요, 3분씩?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각 당에 한 분, 한 분씩 더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 저도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하시고 저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당은 이제 할 사람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고 인심 쓰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두 분, 두 분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하세요.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재판부를 권력기관, 특히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주진우 위원 이 재판부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불만 많습니다. 저번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조차 없이 다 기일이 추정되어 있어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상급법원의 판단이 아닌 일반법원의 판단을,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해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증인이 신청돼서 지금 재판에 대해서 결론 안 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만약에 제때 결론 내려서 유죄로 판결했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선거에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판결에 오류가 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진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됐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례적으로 빨리 된 것이 아니라 6·3·3 원칙에 따라서 1년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1년을 훌쩍 넘겨서, 더더군다나 2심 판결의 오류 때문에 훨씬 많은 기간을 쓴 것

이잖아요. 그게 재판이 오히려 지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선거재판이라는 특성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접수로부터 처리되기까지 한 34일 정도, 이것이 처음부터 전합으로 예정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갖다가 대법관들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다수의견, 반대의견……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불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를 국민의힘에서 정한다든지…… 그러면 향후에 이게 판례가 돼서 다수당이 되면, 우리가 우리 헌정사에서 여대야소인 국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여대야소만 되면 무조건 재판부 정해서 그냥 재판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지요. 또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들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자청해서 받아요. 중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서고 만약에 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정해 가지고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게 재판이겠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재판의 균형이라든지 법리나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이, 정치·경제·사회의 이런 분쟁이 다 법원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조직인데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외부의 어떤 권력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부 구성이 좌우된다,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국민 누가 사법을, 재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점이 저희 전체 대법관들이 정말로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처장님, 처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은 분명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사법권도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처장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이게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법원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3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내란 사건을 기준 사법부가 아닌 특

별재판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이 66%가 나왔어요. 매우 찬성이 42.6%, 찬성하는 편이 23.4%, 반대 30%, 모르겠다 3%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에 3월 8일 날 윤석열을 시로 계산해 가지고 풀어 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 가지고 그 불면, 내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말이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제 조금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법원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저는 지귀연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2월까지 구속사건 일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건만 하고 있어요. 피고인 8명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만 재판하는데 뭔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몇 명 증인 신문한지 아세요? 어떻게 연말까지 끝냅니까, 이것을? 일요일도 없이 매일 해도 500일이 넘게 걸리는데. 이러니까 국민들이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3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기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영장기각된 것을 보면요 구속에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듣다 듣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어째서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까, 중대하면 중대하지? 그 사건은 횡령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3명을 싸그리 기각했어요. 이러니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장재판부도 기각하지 내란재판부는 재판 안 하지, 이마다 윤석열 풀어 주고 나중에 내란 무죄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심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떤 특정 재판, 개별 재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부 이런 부분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 주시고 조금 더 튼튼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일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왜 법원은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원은 지금 옛날 왕조시대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헌법 84조의 ‘소추’의 뜻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대답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헌법 84조의 ‘소추’의 뜻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 공소제기만 뜻하는지, 아니면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나 헌법의 다수설이나 헌법 책에 보면 대부분 형사상의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재판 정지 이유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헌법 84조를 들어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 책에 보면 그게 다수설이 아니거든요. 저는 소추를 기소 외에 재판 정지까지 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법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오죽했으면 헌법 84조 한 줄 쓰고 더 이상 이유를 못 씁니까? 쓸 수가 없지요. 헌법 84조를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됩니까? 그리고 줄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해 달라. 이 특별재판부 보면 지금 결국은 지귀연 판사를 압박하고 한마디로 일종의 내란 재판을 본인들이 원하는, 결국은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 했으니까 이것 무죄 나오면 큰일나니까 이것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경향신문까지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결국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도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에서 나중에 결정이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나와도 결국은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혹시라도 특별재판부가 추진이 되어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역사적인 재판이 결과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체되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해서 법원을 흔들고 하는,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태에 법원이 해야 될 일은 그때그때 다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군택 위원님 토론하시기에 앞서서 처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몇 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스무 개 정도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스무 개 정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각각 합의부마다 특정 사건들을 전담하는 합의부도 있고 일반 사

건을 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스무 개 정도의 합의부에 한 개 내지 두 개 합의부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군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군택 위원 행정처 처장님, 어떤 사안이든 문제만 발생하면 보통 사법의 독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군택 위원 물론 헌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는 사법의 독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사법의 민주성이라는 것도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 또 사법의 어떤 책임성이라는 것 이것도 선진국에서는 많이 논의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군택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만 유일하게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도그마처럼,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일선 재판부에서, 지귀연 재판부라든가 영장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상식, 공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결정들, 판결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장기간 이것이 반복되고 고쳐질 뜻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는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만이 법원행정처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든 저러든, 국민한테 욕을 먹든 말든 사법의 독립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 행정처장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존재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 와서 대신 비난받는 것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다시피 사법 독립의 근본 가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전제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박군택 위원 그런데 그 사법의 독립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책임을 수반하는 독립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군택 위원 근본적으로는 정의나 국민적인 상식이나 국민의 행복,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사법의 독립인 것인지 사법의 독립이 국가의 또는 법원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의 당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급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박군택 위원 그래서 저는 처장님도 아마 속마음으로는 저런 재판부, 저런 법관들 문제점을 지적도 못 하고 바꿔 놓지도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할 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 어떤 권한이나 법·제도·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이 있

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입법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신다고 한다면 행정처장님도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재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재판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심급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통일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어떤 일률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향하는 사법의 본질하고는 조금은 케를 달리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그 특혜를, 다양성의 가치를 내란범이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비교섭단체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아까 토론 안 하셨지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혁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인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재판부가 생기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데 정확히 국민들의 인식은 지금 재판부가 내란 사건 판결을 맡을 경우에 그 심판 결과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론입니다.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사법 당국 자체가 자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돼 있고 제 식구 감싸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윤남근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대택 씨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법관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망이 높은 분인데. 어쨌든 정대택 씨와 최은순—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사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최은순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 버리고 정대택 씨를 법정구속을 시켰던 윤남근 판사가 얼마 뒤에 그 부인이 김충식—최은순의 내연남—에게 23억을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돈으로 그린벨트를 공동소유하고 공동소유한 땅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해제된 그린벨트 옆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 거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각종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 당국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윤남근 하나의 문제이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입장 표명 보내신 거에 보니까 전부 다 어쨌든 별도의 재판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만 잔뜩 써 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련해서 비슷한 이유인데요,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열린공감TV에서도 봤지만 백해룡 경정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 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나서 가지고,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을 할 때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온갖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법무부 내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조사를 하다가 또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권자를 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으로 바꿔 갖고 동부지검에 수사본부를 두고 지금 지휘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최 위원님, 저도 답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첫 번째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는다는 부분은 늘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은 해당 법관이 2007년도에 퇴직하고 2017년도에 아마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전직 판사였지만 퇴직한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도 같이 그 책임을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2·3 사태 직후에 그 위헌성을, 국회의 헌법상 보장되는 권력을 다른 권리기관이 침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건전한 헌법의식하고 달리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혁진 위원** 처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그쪽 업계에 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현직 법관과 사법거래를 할 때 재판 결과 이후에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걸 통상 패킹이라고 이야기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 불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유념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요?

○최혁진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윤남근 판사 게 사실인가요?

○최혁진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퇴직하신 분, 그 이후에 10년 후에 그런 금전 거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과연 범죄적인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금전 거래인지 이런 부분도……

○서영교 위원 그게 어떻게 정상적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원행정처장님, 최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받을 권리에는 재심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만약에 판사가 재직 시에 금전 거래나 또는 사후 공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렇다면 이분이 이미 변호사로 전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생을, 그로 인한 피해를 안고 반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한 범죄 이익을 누린 사람은 대통령 가족이 됐어요. 이분이 당연히 재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과거 잘못된 재판, 권력 남용이거나 아니면 부패와 연루됐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다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익적으로 고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는 자리가 이 국회이고요 그것을 지금 최혁진 위원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은 잘 모르시는 사안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입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법 피해자, 그러니까 검사·판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체계가 공수처가 조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기소도 할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왜? 피해자는 살아 있고 재심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법적 권

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사법부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당사자가 법관을 하다가 전직을 했다, 변호사를 하고 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것으로 다 이해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저……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 분만 하시지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경원 위원 저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안건 5항에서 17항까지 관련해 가지고 안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국회법 57조의2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또 이 전제조건이 간사와 협의하여 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간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간사 선임 절차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안건조정을 신청을 하되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절차가 진행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위원 지정을 일방적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위법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법안심사1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교섭단체 입장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쪽은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라고 하셨고요. 간사 선임을 위해서는 우선 위원 중에 호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제가 간사 선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호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배숙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까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발언을 제가 다시 되풀이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관계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께서—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지요—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는 아마 일일이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대체토론 기간에 충분히,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김용민 간사께서 안건조정소위원회에 두 분, 희망하시는 분을 의견을 여쭈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두 분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히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간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됐다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52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소위 위원 바꿔 주세요, 주진우 위원으로.

○**위원장 추미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는 박지원 위원,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부 위원 퇴장)

○**박지원 위원** 나경원 위원, 애아. 그렇게 나가니까 간사가 안 되지.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세 분과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두 분, 비교섭단체에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선임과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1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1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등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에서 의결했던 대안 3건의 내용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통합하여 각각 3건의 안건조정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법률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7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란 특별법을 오늘 논의하면서 법원 측의 서면을 통한 또는 행정처장님의 직접 진술을 통한 의견제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단 9일 만에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 즉시, 파기환송 판결은 오후 3시에 있었는데 그 1시간 만에 오후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거대한 음모에 의한 내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한 거대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덕수 출마와 대선 승리 후 집권한다면 내란 수괴 일당, 윤석열 사면을 비롯한 대대적인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혹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4개월 후에 내란 수괴가 그대로 아무 제한 없이 석방이 되는 것이고 또다시 대로를 활개 치면서 정치 선동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게 내다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너뜨린 사법질서를 신속하게 정의롭게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와 또 사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일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내란으로 인한 질서 회복과 정의 회복을 방해하는 곳이 다름 아닌 사법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타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재판이 바로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구속일자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해괴한 편법으로 윤석열만을 위한 기괴한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판결 때문에 국회가 별도의 특별재판부라는 그런 비상한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법원은 의견을 내면서 신중검토라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한 헌법학자도 아무런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설치가 사법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판사로만 구성되어 헌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조속히 내란으로 무너뜨려진 사법정의를 회복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사법부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차관 이진수

검찰국장 성상현  
국방부  
장관 안규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이창규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출석 진술인

김종민(변호사)  
윤동호(교수)  
차진아(교수)  
한동수(변호사)